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5일(화)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220368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8)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3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4)

상정된 안건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38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 38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63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63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63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64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6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64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6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6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64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64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8)	64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4)	64
3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108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108

(09시33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례 예결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다섯 분이 예결소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가급적 오후 6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시작을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09시34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유상범 위원** 예.

의사일정 순서가 방금 특검안 같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고 일방 상정돼서 바로 저희 소위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서열 순서상도 이게 1번이 돼서는 안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의사일정 순서에 맞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돼서는 별씨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재의 요구된 법률안입니다.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당의 정치적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논의하다 보면 다른 법안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됐던 일부 법률안들은 조금 뒤로 하고 현재 양당 간에 논의에 다툼이 없는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논의가 되는 법률안을 그 이후에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 법 왜곡죄, 표적수사 금지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돼서, 양당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다툼이 없는 법률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숙려기간 미도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로써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보완을 했고요. 이 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고, 별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논의하고……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오늘 논의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 앞에 논의, 금방 합의될 부분인지……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속히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민생이 우선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내용은 다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간사께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다툼이 많은 부분을 먼저 논의하게 되면, 논란이 되다 보면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한 집중이 잘 안 되니 다툼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고

그걸 빨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안에 이거 진행을 하자 그렇게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고 소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와 같이 논란이 많은 법안을 먼저 앞에 배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 법안을 보면 성폭법이랑 형법 일부개정안, 2개 하면 이것은 극히 내용이 적어요. 하나는 간첩법이고 성폭법은 소위 합정수사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2개를 먼저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법을 의결을 안 한다는 것 아니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고요.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니 기존의 특검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일찍 출발시켰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걸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양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자고 내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영교 위원 저희에게도 의사진행 기회 주시겠습니까, 짧게?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럼 한 분만.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간사님이시라서 들어오시기 전에 충분히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든 한쪽 의견대로,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계속 주고받으면 진행 못 하고.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말도 맞고 그런데 이 특검법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게 대중의 관심사입니다.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빨리 통과시키고 그다음도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견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진행하려고 하는 순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견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있는 법안도 빨리 진행……

저는 오늘 나온 법안은 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다 통과시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으면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합의 볼 수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심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기존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월 18일 회부된 동 법률안에 대해 11월 4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쳤고 같은 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특검법 근거의 모호성,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 등의 위헌성, 야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 불공정성, 공수처 수사 대상과의 중복성 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명태균 녹취록 등 특검 수사 대상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측 조문 내 밑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래 의결되었던 대안과 비교하여 새로 수사 대상에 추가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 주체와 후보자 자격, 특별검사의 결격 사유 및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관련하여 아래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입니다.

특별검사 자격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 대안에서는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조직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우측에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8인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수사관은 6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파견 검사 30인 이내, 파견 공무원 60인 이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안 제6조 3항의 관계기관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랫 부분입니다.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특별검사 등과 파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등 특별검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을 전제로 재연장 30일이 가능합니다. 재판기간은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은 3개월 이내, 3심은 3개월 이내입니다.

안 제9조 5항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 처리보고, 안 제12조는 대국민 보고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해임되는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부칙까지 관련해서 안 제19조제1항은 이의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21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시면 부칙 안 제4조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법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비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결 원칙을 언급하셨는데 이 법안의 위헌성은 바로 그 대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기존에 특별검사법안이 총 13건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 이 법안과 같이 수사 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제외된 상태에서 특별검사후보자가 추천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특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도 당시에 소속 정당은 제외가 됐습니다. 2018년도 드루킹 특검법에서도 당시 관련된 정당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건 모두 공통된 점이 바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당시 그 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의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뜻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론 우리 헌법 49조는 다수결 원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다수결 원칙은 그냥 숫자의 우위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을 하면 좀 들어 보세요. 기관 의견을 말하는 거 아냐.

○**소위원장 김승원**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기관 의견도 들어 봅시다.

○**유상범 위원** 기관 의견을 들어 보시고 해야지.

○**서영교 위원** 아니, 이제 차관으로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들이 했는데 그런 것은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영교 위원** 지금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유상범 위원** 서 위원님, 들어 보세요. 뭘 또 반복이에요?

○**주진우 위원**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기관에서 당연히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소위원장 김승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 안에……

○**서영교 위원** 아니, 차관이 전투하러 왔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2분 시간 제한을 여기 어디다 둬요?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께서 2분 안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차관 김석우** 한 5분……

○**서영교 위원** 무슨 5분이에요? 차관이 전투하러 왔어요, 여기에?

○**주진우 위원** 전투라니요. 기관의 의견을 밝히는 건데 그걸 왜 전투라고 하십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소위에서 무슨 시간 제한을 하고 그래요, 언제부터?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성윤 위원** 무슨 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여야 합의 의미가 뭔지 따지고, 도대체 왜 왔습니까?

○**유상범 위원** 진행은 하지만 소위에서 지금까지 시간 제한을 한 적이 없잖아.

○**소위원장 김승원** 2분 안에 해 주시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차관, 2분 3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나라가 잘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마치 한쪽 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꾸 헌법 파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관증인으로서 말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톤 다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분 안에 말씀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잠깐만 30초만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하고 위헌이라며, 해당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이 추천하는 게 위헌입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이 아니고라고 판시했고 그 사례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니 또다시 오늘 와서 그때 그 내용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말이 돼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것 설명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때 법무부가 그 내용을 정리했을 때 그게 다 틀렸다는 내용을 정리했던 거기에 있는 다른 내용을 찾아와 가지고 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특검법 자체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관련해서 휴대폰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검찰이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계속되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차관에게 지적하는데 그 전에 법무부장관과 차관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낱이 그 논리를 깨 준 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1분 정도……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여기 2페이지, 3페이지에 보셨듯이 이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특검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위주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야지.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 한 번씩은, 일단은 한 번씩은 듣겠습니다. 다만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소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예가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그러면 3분 드릴 테니까 톤 다운해 갖고……

○서영교 위원 아니, 지금 5분은 한 것 같네.

○주진우 위원 이렇게 정치 일정을 정해 놓고……

○유상범 위원 이게 무슨 전체회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주진우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먼저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어제 다수결 원칙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영교 위원 차관이 뭘 반박을 해요, 반박을?

○유상범 위원 아, 좀 가만히 있어요! 듣고……

○이성윤 위원 차관이 여기서 왜 반박을 합니까, 왜?

○유상범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하러 기관 의견을 들어요?

○주진우 위원 아니, 기관 의견을 내지도 못합니까?

○전현희 위원 일단 얘기 듣고 진행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기관이 제대로 의견을 제기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제대로 하고 있구먼. 아니, 그러면……

- 서영교 위원 뻔한, 그동안 잘못돼서 지적했더니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주진우 위원 위헌성을 지적 안 할 거면 기관 의견을 왜 듣습니까?
- 유상범 위원 아니, 서영교 위원님 맨날…… 가만있어 봐요.
- 서영교 위원 양심에 손을 얹고 해 보세요!
- 이성윤 위원 다수결 의견이 기관 의견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품평을 합니까?
- 유상범 위원 윤석열 대통령……
- 서영교 위원 대통령 지지율이 왜 17%까지 떨어진 거예요?
- 유상범 위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이성윤 위원 상관있지요.
- 서영교 위원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수사하면서? 김혜경 씨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 소위원장 김승원 자, 차관님!
- 유상범 위원 그것은 왜 얘기 안 해?
-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이 불을 질렀는데……
- 서영교 위원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것은 뭐예요?
- 이성윤 위원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김건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 유상범 위원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휴대전화 했어요?
- 서영교 위원 수백 번 압수수색한 것은 뭐예요?
- 유상범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했어요? 다른 데 했지.
- 주진우 위원 휴대전화, 주거지 안 했습니다.
- 서영교 위원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것 아니에요, 수백 번을?
-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법안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범 위원 아니, 핸드폰 가지고 얘기하려면 똑같지.
- 서영교 위원 아니, 주가조작해서 휴대폰이지.
- 유상범 위원 법카는 아니에요?
- 서영교 위원 법카도 다 하고 다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 유상범 위원 누구를 압수수색했어요?
- 서영교 위원 과하게 압수수색해 가지고 이제……
- 유상범 위원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아직도 몰라요?
- 유상범 위원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당 대표가 사과하라고 하는 얘기도 못 들어요?
- 유상범 위원 묻는 말에 대답해 봐요.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 주진우 위원 위헌성 여부를 제대로 심사해야 됩니다.
- 박균택 위원 아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

까?

○서영교 위원 이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유상범 위원 내가 아래서 이것 좀 뒤로 빼자고 한 건데 이것을 기어코 앞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요?

○소위원장 김승원 앞에 시원하게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시원하게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원장 김승원 1분 드릴 테니까 계속 1분 동안 말씀하세요, 그러면.

○법무부차관 김석우 헌법상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지 국회의원들에게 속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토론을 통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차관!

○이성윤 위원 이보세요. 차관……

○유상범 위원 좀 들어 보세요!

○주진우 위원 아, 왜…… 말씀 좀 끊지 마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니.

○유상범 위원 왜 말을 끊어?

○소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것 몰라요?

○이성윤 위원 여기 국회의원들 가르치려 왔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아니고, 제가 반말을 한 것이 아니고 40조를 언급한 겁니다.

○전현희 위원 진짜 들을 필요 없네요, 진짜.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성윤 위원 위원장……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 취지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류로 대체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법무부차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톤 다운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위원 기관 의견을 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유상범 위원 듣기 싫어도 들어 보고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막으면 어떻게 해?

○전현희 위원 법무부는 딱 중립을 지켜야지요. 뭐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희도 기관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관 의견을 들어야지요.

○전현희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법무부차관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요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전현희 위원 중립적으로 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드린 취지는 입법권은……

○소위원장 김승원 그만하세요. 차관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전현희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십시오.
- 이성윤 위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 서영교 위원** 입법권이 국회의원들에게 없다고요?
- 유상범 위원** 위원장!
- 주진우 위원** 왜, 차관 의견이 나가면 안 됩니까?
-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 발언 드리고 그다음에……
-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 서영교 위원** 국회의원들에게 없다고요?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라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에 있는 것인데 제 취지는……
- 서영교 위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것 몰라요?
-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 취지는……
-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게 말이 돼?
-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전현희 위원** 그 자리 말고 여기에 오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걸로는.
- 이성윤 위원**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다음부터는.
-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동혁 위원**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요. 주진우 위원님이 아까 신청하셔서……
- 주진우 위원** 먼저 하세요.
- 장동혁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 전현희 위원** 지금 도대체 법무부차관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
- 서영교 위원** 아니, 상대 설득 능력을 안 배워요?
-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 빨리하세요.
- 유상범 위원** 좀 적당히 하세요! 듣기 싫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막으면 어떻게 해, 듣기 싫다고.
- 법무부차관 김석우** 말씀을 들으시고 평가를 하시지요.
- 주진우 위원** 먼저 하시라니까. 제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전현희 위원** 지금 법무부차관……
- 유상범 위원** 얘기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못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 주진우 위원** 왜, 여야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야지요.
-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또? 여야 번갈아 가면서 들어야지 이게 또 뭐 하는 거예요?
- 주진우 위원** 여야 번갈아 가면서 들어야지요. 지금 장동혁 위원 신청했지 않습니까?

○ 소위원장 김승원 또 드리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또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신청했잖아.

○ 주진우 위원 두 번 연속으로 했지 않습니까?

○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이 포기하셨잖아요.

○ 주진우 위원 제가 장동혁 위원 먼저 발언권을 주라고 한 거지 제가 왜 포기해요?

○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전현희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위원장이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 주진우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지나갔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주진우 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 유상범 위원 뭘 또 지나가? 이게 이런 식으로……

○ 서영교 위원 하고 나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 유상범 위원 아니, 어떻게 정청래 위원장보다 더 해요?

○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 서영교 위원 하고 나서 하세요. 그러면 되지.

○ 전현희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회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특검을 지정하는 것은 자신이 관련된 정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한 기준의 사례 세 가지를 들면서 이 경우에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데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검사를 자기가 고르겠다, 지금 법무부 얘기나 여당 얘기에 따르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수사하는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대통령이 추천을하게 되면 누가 봐도 그것은 불공정하고 그리고 굳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위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수사하거나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는 제삼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측에서 철저히 수사할 검사를 지명하고 추천하고 뽑아야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는 거지,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그 대통령과 배우자를 보위하기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을 한다? 이거야말로 위헌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위법하고 그리고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측에 소속하는 정당이 동의를 하고 함께했던 것은 그것이 합헌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한 거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법무부가 주장하는 거기에 반대한다 그 논리야말로 위헌이고, 합헌적인 야당의 논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명품백이라든지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여기에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무혐의를 그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는 정권이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내린 거고 여기에 정치검찰이 동조를

한 거고 이 전체가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특검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이 위헌을 저지르고 위헌적으로 헌법을 농락하고 법률을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농락한 그 당사자들이 지금 와서,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고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는 내가 임명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법무부가 동의를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기준에 내곡동이나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특검 이 경우에는 적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한 거고요. 그것을 안 하는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당연히 법무부의 자세인데……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위헌과 위법의 공범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할 시간인데요. 법원행정처의 기관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우선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3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의사일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결국은 표결해서 1항은 오늘 통과될 것이고 14일 날 본회의에 올릴 거라고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절차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하시고 오늘 통과시키시고 또 전체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시고 표결하시고 14일 날 본회의에 올리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수결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 다수결이든 형식적 다수결이든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표결하실 거고 통과시킬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기관의 의견은 기관의 의견대로, 여당 위원들의 의견은 여당 위원들의 의견대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은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되고 속기록에 남겨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문제를 지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기관이 어떤 의견을 내든 그것은 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발언 시간에 지적하시면 됩니다. 소위원회입니다. 발언시간에 제한도 없고 저는 발언 횟수에 제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관의 의견을 물어 놓고 기관이 법리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기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관을 혼내고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게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그동안의 관례와 다르게 오늘 이 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에서는 보통

카메라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카메라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뭔가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 카메라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은 기관대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각자의 이야기를, 기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표결하십시오. 그리고 다수결로 많은 숫자 가진 더불어민주당께서 이것 통과시키고 14일 날 본회의 올리십시오. 왜 입을 막아야 됩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번 토론한 것 이외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더 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고 기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현에 있어서 국회를 정말 모독하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의를 준 겁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런데 저의 어떤 말 중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서영교 위원** 가만히 계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모욕감을 느끼게 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만 좀 하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뭐 말을 못 하게 막아 놓고 무슨 모욕감을 줘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가지고 모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제지를 한 것이고요. 차관께서는 거기에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6조 3항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논의 과정에서 법원이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 과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법률안 규정 과정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법원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 심사자료 14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정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렇게 의견을 얘기해야지.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시간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글쎄 의견은…… 내 마음에 듣다 안 듣다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서영교 위원 의견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우선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차관님, 왜 본인이 어떤 문제를 지적당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그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여야 합의라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한 줄, 한 문구라도 나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여야 합의라는 것이 합헌성의 중요한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균택 위원 그것은 합헌성을 얘기할 때 지나가는 방론으로 얘기를 했겠지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법무부차관님은 법률적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 할 분이 어디 헌법, 법률에 한 줄도 안 나오는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할 법한 여야 합의 얘기를 전제로 꺼내는 것 그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내부의 문제겠지요. 의회 내부 관례의 문제고 상호 존중의 문제로 그런 얘기가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 견해를 대표하는 법무부차관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었을 때 어느 부처가 반대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대통령시행령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이 이것 어느 부처가 반대했으니까 나는 이 대통령시행령을 못 따르겠다고 얘기한다든가 오늘 또 하나, 검사의 구속피의자 소환권을 인정할 것이냐,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교도소 가서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 좀 이따 논의가 될 거지요? 그때 차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는 그 규정을 죽어도 반대한다고 할 것이고 교정본부는 속마음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교도관들은 반드시 방문 조사로 바꿔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본부가 속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 의사 그것을 법무부가 반대하고 오늘 법무부 의견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무부 의견은 인정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차관님 그것 동의하겠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소화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외부적으로 기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효력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헌법에 정해진 규정, 법률에 정해진 규정대로 다수결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 공무원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특검법, 이게 조항이 특검이 되는 자의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관련해서 3호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2호의 직에 있었던 자’라고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2호가 모든 공무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금지시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을 받고 있는, 불신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법이, 특검제도가 도입되게 만든 사법경찰관,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수처의 검사 여기만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른 공무원들까지 이것을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2호의 직에 있었던 자’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청 검사, 공수처 검사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좀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차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통과된 특검법이 14건인데 4건은 여야 합의 없이 도입 절차를 밟았고요. 특히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 BBK 특검, 내곡동 특검법은 여야 미합의에 그쳤지만 최종 통과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특검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으로 인한 설전이 오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것 한마디만……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 언론 촬영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인 소위원회 촬영은 회의 시작할 때 스케치 정도만 허용해 왔습니다. 지금 기관 의견까지는 언론 스케치를 허용하고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비공개로, 언론 제한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일단은 언론인 여러분 나가시고 난 후에 그다음에 차관님 말씀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법무부차관 의견이 왜,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서영교 위원 저도 의견 한 가지만……

○유상범 위원 좀 들어 보세요.

○주진우 위원 법무부차관 의견은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지금?

○서영교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소위원장 김승원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언론인 계실 때 저는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유상범 위원 아니, 법무부차관 의견은……

○소위원장 김승원 언론인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저까지는 발언할게요. 지금 다 발언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언론인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박군택 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소위원장 김승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아니, 법무부차관 의견이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됩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이것은 여당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는 것……

○주진우 위원 애초에 스케치만 했어야지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 아니, 그리고 애초에 지금……

○주진우 위원 애초에 스케치만 했어야지요, 아니면 공정하게 하든지.

○유상범 위원 소위에서 사전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것은……

○소위원장 김승원 동의하셨잖아요, 여기에.

○유상범 위원 아니, 들어 봐요. 말을 하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르면 어떡해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발언권을 얻고 합시다. 저 발언권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소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법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안 토론이신가요?

○서영교 위원 예, 법안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계속 민주당 위원님들만 발언권을 주고 지금 주진우 위원은 아까부터 발언하겠다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있고……

○주진우 위원 저 아직 발언 한 번도 못 했어요.

○유상범 위원 기관에서 의견을 말한다면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반대하든 안 하든 듣고 나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승원 한 번씩은 다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세 번째예요, 서영교 위원은. 이렇게 진행……

○서영교 위원 한 번 했어요, 한 번.

○주진우 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요…… 이것 소위 회의록에 다 남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이 법안에, 지난번에도 특검 때 자료 제공 부분에서 법원은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합의했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원의 영역은 법원 쪽에서 요구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법원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등’ 자에서 법원이 그 내용은 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법원행정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무부차관께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국회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가 정리할게요.

금방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도 통과된 특검의 사례, 남북 정상회담 대북송금 의혹 관련.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관련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야당의 주장으로 한나라당 쪽에서 한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그리고 이명박 BBK 추가조작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채로 여야 합의 없이 한 거예요.

차관, 알겠어요? 이 내용 알고 있지요? 들으세요, 우선.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 제 취지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제 취지는 이 특……

○서영교 위원 다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니까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면 제 발언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다음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전현희 위원 차분히 하세요.

○서영교 위원 우선 대북송금 할 때는 한나라당은 투표했고 민주당은 불참했었어요. 여야 합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 등은 투표했지만 열린우리당이 합의하지 않았어요. BBK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았어요. 내곡동 사저도 새누리당이 전원 반대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합의하지 않은 사례가 네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법무부가 그동안 다 합의하고 했지 합의 안 한 적이 없어요라고 해서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제기했고 여기 소위에서 전문위원들이 이 사례를 전부 다 내놓은 거예요.

그 정도는 공부했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서영교 위원 들어 보세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중간에 끼고 그러세요!

여기 와서 기관은 기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특검이 위헌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 여야 합의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통과가 돼요. 그런데 최순실 등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소송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일부분은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것을 고려할 때…… 잘 들으세요.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헌법재판소 헌바196 판단이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판단이 있는데 이 판단에 대한 앞부분을 오늘 듣고 온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영교 위원 그 앞부분을 듣고 왔어요. 그동안 법무부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는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합의하지 않고 된 적이 있어요라고 우리가

팩트 체크해서 그 부분을 탄핵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도 야당만 추천한 사례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해서 탄핵시켰어요. 그리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탄핵시켰어요. 그랬더니 오늘 와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마치 전쟁하듯이 그런 자세로 지금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탄핵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무부차관은 기관의 증인으로서…… 이 내용은 그동안 이야기했고 지나간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되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그리고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지금 법원행정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내용도 특검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의 증인, 기관의 차관이 해야 될 자세와 모양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가 입법권이 있지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기관증인이 할 수가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제가 부연설명을 하려고 할 때 말을 자르셔 가지고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유상범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들어 보세요. 그만……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이것 마무리를 지을게요. 들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주진우 위원** 충분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서영교 위원** 국회가 입법권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들어 보시자고요.

○**주진우 위원** 일문일답을 해야지요.

○**서영교 위원** 끼지 마세요. 제가 하고 나면 그때 하세요.

○**유상범 위원** 끼지 말라니,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 지금.

○**이성윤 위원** 옳으신 말씀 하시는데……

○**서영교 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 여기에 디테일하게 조언할 게 있으면 그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 짧게 답변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특검 법안 자체가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하는 국회의 그런 활동 자체에 대해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이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야 합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N분의 1로 입법권을 나눠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토론 절차가 중요하다 그것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언급을 했던 겁니다.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뒷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주고받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주진우 위원 저도 토론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서영교 위원 내가 앞의 이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예.

여야 합의 없이도 특검이 통과되어서 실시가 됐어요. 그렇지요? 내가 앞부분을 이야기 한 이유는, 특검을 임명하는 데 여야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야 합의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 결로 가는 건데, 그렇지요? 내가 앞에 말한 네 가지는 특검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도 여야 합의 없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합의가 안 돼도 특검이 가는데 작은 것으로 들어가서 특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의 큰 전제에 의해서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야 해요.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당도 합의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 여당 의원들도 최소 4명 정도는 이쪽에 왔고 이제는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당도 이것에 합의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도 진행된 사례를 나는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같은 시간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소위를 따로 하는 이유는 일단 토론을 충분히 하자는 얘기고 또 기관 의견을 충분히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에 와서 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법률 내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오히려 입법정책적인 영역이지만 위헌이냐 아니냐, 이게 기존 법체계랑 충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지금 거르기 위해서 소위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관 의견은 당연히 자세히 제시가 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법사위가 무려 44명의 일반인을 포함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딱 국민의힘 의견 6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서 제출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가 안 되고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위헌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이 특검법은 입법권이 수사나 사법 체계에 관여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원래 삼권분립 때문에 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사나 재판은 다른 기관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관여했을 때는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거고요.

법무부차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수 정치세력이 소수 정치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가 중요한 헌법 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판례를 시간 구애받지 말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하는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일부 정치세력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서 판단한 것은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했고 여야 대표 합의로 발의됐다는 것을 강조했고 실제로 당시 발의된 법안에 보면 이백아홉 분들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과 관련된 국회 활동입니다. 국회 활동에 있어서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라고 하는 큰 기관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이 양쪽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이게 정당화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뒤집어 보게 되면 그런 합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헌법적 논란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특검 관련해서도 기존에 법무부에서 이미 위헌이라는 의견을,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걸 한 번 지적을 했었고 본회의 의결이랑 재의결 과정에서도 법무부장관이 그런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법안하고 지금 현재 법안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수사 대상이 더 늘고 관련 규정들이 더 위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출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다라고 하면 법무부도 어차피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해서 위헌성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그 법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더 강화된 것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분명히 수사 대상이라든지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수사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제가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회 다수결 물론 중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토론과 토의가 전제돼야 되는 것인데 국회법상 표결 절차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재의결도 다 헌법적 결단에 따라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의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석수에 따라서 재의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재

의요구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줬는 대신에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국민들을 무시하듯이 법안의 위헌성을 더 걱정 내고 협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도 협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숙련기간도 안 지키고 며칠 만에…… 이것도 한번씩 발언 기회를 주고 대충 통과시킨다? 그런데 또 위헌성은 더 강화된다? 그러면 다시 재의결해서 또 부결되는 절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무용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오히려 반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꼭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께서는 다수 세력, 소수 세력 이런 표현보다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정치적인 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게요. 그리고 차관 말씀한 것 들어 보면 권한쟁의라도 할 태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차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까지 다 섞여서 기관 의견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실 때 단어라든가 표현 강도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가급적이면 법률안 내용에 집중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사가 자신과 혹은 자신의 배우자에 관한 재판을 할 수가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제척이 되고요. 그 외에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임명하는 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현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해충돌이잖아요. 그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지요. 판사님답게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지요.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해충돌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습니다.

차관님,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자신이나 자신의 집권 여당,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이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게 차관님이 법무부에서 주장해야 할 법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에 대해서는 임명과 추천에서 빠져야 한다, 회피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법무부다운 주장이고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본인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본인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위헌적인 사안에 동의하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할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리에 어긋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법무부가 해야 할 법리예요.

그런데 차관님이 오늘 여기 와서 국회 여야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차관님의 발언 범위를 초과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야 합의를 하는 게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당연히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라라고 주장하는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의를 못 해 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쪽이 잘못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해충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여당이 잘못된 거고 대통령이 잘못된 거잖아요, 법리상.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이고 자기와 배우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본인이 스스로 셀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무부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여야의 합의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법무부의 지금 태도는 그런 위헌과 위법의 공범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장동혁 위원 저……

○유상범 위원 먼저 하세요. 갔다 와서 할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일단.

○유상범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소위에서 그런 얘기가 어딨어, 지금?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장동혁 위원 차장님, 저는 그냥 법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수사 대상 2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인데, 차장님이 특검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되팔았다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세요?

그리고 5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 개입했다고 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단초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세요?

몇 가지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11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유출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누구를 불러서 무슨 수사를 해야겠다는지 감이 오세요?

이게 적어도 특검이라고 하면, 수사 대상을 특정하려면 특검이 와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사건을 두고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누구를 불러서, 아니면 어디부터 압수 수색을 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슨 주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냥 통틀어서 부정한 이익 취득하고 주가조작했다? 그러면 다 털어야지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위에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그거 가지고는 마음에 안 드는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다 통틀어 가지고 주가조작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서가 있든 없든 다 털어 보자 이거 아닙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일가가 국정 개입했다, 인사 개입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국정 개입이라는 자체도 모호한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누가 언제 무슨 개입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특정도 되지 않고 그냥 다 털어 봐야 돼요.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탈탈 털어서 어떤 개입을 했는지를 한번 그냥 뒤져 봐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다 뒤져 봐야지요. 정보 유출도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유출했는지 적어도 특정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법에서? 그래야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장동혁 위원** 지금 이 법 조문이 충분히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장님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 특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유상범 위원** 접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 거기만 하지 말고 여기도 쟁겨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이거에 대해 한 말씀 잠깐 드리고 간사님께 토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2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혐의인수 그 의혹이 떠오르고, 5호 같은 경우에는 김진우 씨 오빠인가요? 김진우 씨가 인수위라든가 여러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1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민간인에게……’ 이 부분은 명태군 씨 관련된 창원산단 그 논란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아마 여기에 그걸 지적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격이 너무 참담하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배려 때문에, 그냥 수사팀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수사하라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고 하면 넣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토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장동혁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제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넣자고 하는 것은, 소위에서는 최대한 법률의 정합성을 만들고 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완결성 높은 입법안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한 없는 토론을 합니다. 비록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 합의안을 만들어서 결국 국민들에게 내놓는 법률안을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소위에서의 입법안의 기본 관행이었고 또 오랜 기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입장이 명확하게 있고 여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야당은 이 법안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고 그렇다면 표결로 진행을 하는 그 상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소위에서 절차적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표결을 하니 토론을 하고 나서 제일 뒤에 표결을 처리하는 것을 예정하고 내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민주당에서 신속한 표결을 통해서 아마 이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 법안을 앞에 놓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행정차장님, 사실은 지금 매번 특검법안이 제안될 때마다 언론에 나온 의혹 제기의 수사 대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차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개개의 수사 대상의 내용들이 전부 구체성이 없이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수사 대상으로 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의 문제 그리고 특히 무슨 대통령실 수사 방해라는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증거인멸이니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여튼 구체적인…… 어떤 행위든지 뭐든지 처벌하겠다, 뭐든지 모든 행위가 다 수사 대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저는 또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만 14호를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각 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그런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별건 수사를 할 때는 관련된 사건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그냥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어떤 사건이든 별건의 사건이든 범죄가 되면 뭐든지 별건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규정 형식 아닌가요, 이것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안심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그 표현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판단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은 별건 수사를 관련 사건의 인지,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련성 있는 인지까지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련 사건의 인지도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것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와는 아예 맞지 않는 이런 형식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헌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차관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말해서 특검 추천과 관련되어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이 부분은 결국은 위헌성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차원에서의 주장이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위헌성 배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결국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의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부서의 권한을 별도의 기관으로 주는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간다’ 이래서 본인들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일방 통과시킵니다. 국회에서의, 절차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와 같은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적 권리지요. 헌법에서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의 다수결의 일방적인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재의 요구를 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부인 거라서 하면 안 되지.

○유상범 위원 부인 게 아닌 다른 여러 법률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부인 거예요, 그 법률도, 스물몇 건이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또 국회가 그것을 다시 표결을 해요.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특검이. 그런데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반복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또 다른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 내에서 토론 절차를 통한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지금 이 특검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의라도 하는데 특별검사후보 추천 행위 자체는 한쪽 정당은 아예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특히 강조했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검사 제도가 안고 있는 위헌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야 간의 어떤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정회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성윤 위원님 아까 손을 드셔서, 10시 40분 전에, 이성윤 위원님 토론 듣고 그다음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자꾸 명확성, 명확성 얘기를 하는데요. 수사 대상을 가지고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이 구체적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춰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법원에서 명확하지 않은지, 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혹시 디올백 불기소장 읽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내용을 알지 마시고 명품백 불기소장 한번 읽어 보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감찰을 해야 할 정도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도 정말 황당하기도 한데, 명품백 불기소장 한번 상세히 읽어 보세요. 30쪽이에요. 얼마 안 되는데 읽어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원래 보험을 들려면 기본적으로 선물을 조금씩 계속 줍니다. 그렇잖아요. 6월 달에 화장품 주고 7월 달에 책 주고 술 주고 8월 달에 다시 선물 주고 9월 달에 명품백을 줘요.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검찰 판단을 보면 ‘우리나라에 국정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했더니 국정자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청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것도 ‘개인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에게 국정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도 있고 국민경제 그다음에,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이 오셔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5월 달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8월 달에 ‘문화재청장 임명해 주세요’하면서 돈 주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황당한 얘기가 써 있고요.

또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2022년 9월 달에 명품백을 줘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뭘 하느냐 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차관님, 불기소장 읽어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피청탁자가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선물 줘 놓고 한 달 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것은 피청탁, 청탁을 받은 사람의 예측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것 읽어 보고요, 국민들께서 읽어 보면 염장이 터질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이 특검법 보고 말이지요, 왜 특검법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날 인사 청탁한 것만 수사해라’ 그러면 특검이 그것만 보고 말아 버려요. 하루만 빗나가도 이게 준 날짜와 현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식으로 불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사 대상은 이 정도로 해야만이 적어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지 이것 몇 월 며칠날 뭐 한 것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그러면 특검이 수사했어요, 그 결과 안 되면, 그 날짜가 아니면 검찰식으로 불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불기소를 검찰이 해 가지고 그 검찰 불기소 때문에 특검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차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의견 제시를…… 저는 의견이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면 의견 냈습니까? 서면으로 의견을 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관련 의견은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한 의견은 제

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차관님이 의견 내는 것은 여기 오셔 가지고 법률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법무부차관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와서 헌법을 얘기하고 국회를 얘기하고 그런 것은요 월권입니다.

과거에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법원의 판결을 많이 얘기했어요. 헌법재판관이나 국회는 판결을 선도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법무부나 법원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판례가 이렇기 때문에, 옛날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이렇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것은 선후가 바뀐 거지요.

만일에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법무부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헌법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어저께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여야 합의’ 또 ‘비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고요 도대체 이렇게 뒤끝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차관님이, 저도 사실은 위원회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의견내는 것은, 그렇게 뜻뜻하면 의견을 내세요. 그런데 검찰이 요즘 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낮을 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법무부나 대검이 그렇게 헌법·법률 찾는 것을 보고, 공정·상식을 찾는 것을 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차관님이 오셔서 국회를 가르치고 위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건은 숙련기간 자체가 사실 아직 남아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아직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의견을 왜 안 냈습니까? 지금까지 특검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의견을 냈고 본회의에서 장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수도 없이 재의결 요구 이유 말씀 많이 했고 위헌이라는 얘기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차관님이 그런 말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더 염장 지르지요. 그러면 차관님이 당당하게 명품백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다시 수사하라고 하세요.

차관님이 만일에 검사장인데 차관님 가족이나 차관님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고발장이 왔어요. 차관님, 그러면 수사를 누구한테 시킬 겁니까? 수사검사를 본인이 고를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은 현정사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헌법을 들먹여요? 헌법을 얘기한다고요? 법무부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는 대통령한테 가 갖고 ‘이 특검 받으시고 당당하게 해결하십시오. 뜻뜻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해야 되지요.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특정할 수가 없겠어요?

○**주진우 위원** 여야 위원 발언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저는 몇 가지 의견을 더 드리겠지만 이 법안에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늘었습니다, 열세 가지로 늘었는데요. 기존의 특별수사관 그다음에 수사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특별검사 한 분하고 검사보 여덟 분 그다음에 특별수사관 60 그다음에 파견검사 30, 파견공무원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사 대상이 늘어났으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짧게 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두 번째는 수사기간도 이런 열두 가지, 열네 가지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수사기간도 다시 지난번에 세팅했던 것처럼 170일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반년 이상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수사기간을 한 30일이나 최소한 반년 이상은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수사인력도…… 이 정도 되면 도저히 170일 이내에 수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인력하고 수사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해충돌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래 특검의 제도적 취지가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입법권이 사법이나 수사에 들어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모든 의혹들이 거의 예외 없이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먼저 하고 의혹 제기된 것들이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넘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발을 한 사람이 수사를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옛날 방식이지요, 내가 고발하고 내가 수사하고. 그렇게 되면 고발을 한 특정 정당 사람들의 의사로 선임된 특검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 역시 일종의 이해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나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도, 엄밀히 얘기하면 검찰에 고발되는 것도 다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행정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라고 해서 전부 다 특검의 임명권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또 다른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추천권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법무부차관도 기관 의견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제 논리랑 맥이 달아 있는 겁니다.

수사 주체의 공정성이 보장되려고 하면 특히 다수의, 아까 정치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수당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다수당이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매번 이게 현정사에서 반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수 정당은 늘 특검을 선택해서 다른 정당에 관련된 의혹들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 정당이 항상 다수당은 나오기 마련인데 다수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토론·토의하고 또 민생과 관련된 정책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검을 하다가 허송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수사 대상도, 보통 특검이 여야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은 수사 대상의 범위를 놓고 그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특검이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세력에서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히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특검의 권한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검의 선택 방식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테다가 수사 대상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어서, 그중에는 일반적으로 언론 기사 하나 난 것으로 제기된 의혹들도 많고.

마지막으로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물론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만 딱 수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의혹들과 관련된 일반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조사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검찰에서 수사받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재판도 받아서 여러 가지 사법 절차나 위험에 노출이 됐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특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나 적법절차 보장 차원에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법안 내용 중간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6조 3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셨고, 6조 3항은 지난번 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14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법원행정처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주진우 위원 법안 자체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다 이렇게 남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전체 조문의 설계 자체가 위헌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합법적인 걸 전제로 해서 그 조문의 디테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디테일까지 가기 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께서 의견은 말씀하셨고요.

○ 주진우 위원 의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 의견 제외하고 6조 3항은 법원행정처 수정 의견 쪽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서영교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의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4조 3호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박군택 위원님께서 안을 말씀하셨고 제정안의 3호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이 부분을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 이렇게 수정안을 의견 주셨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는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역시 저희는 분명히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의 핵심 조항들이……

○소위원장 김승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예.

전체의 핵심 조항들이, 특검의 임명권이라든지 수사 대상이라든지 굉장히 큰 조항들이 전부 위헌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엄청나게 작은 쟁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저희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4조 3호에 의견은 있으신데, 이 4조 3호 수정안이 위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별다른 의견은 없다라고 하는……

○주진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큰 규정들이 다 위헌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박군택 위원 저……

○소위원장 김승원 박군택 위원님.

○박군택 위원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반영을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호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호 부분 중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 이 부분을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주식 등’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5호와 관련해서는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했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을 김건희가 그 일가와 명태균 등 비선실세의 영향을 받아 국정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정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호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이 부분에다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정리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성완 예.

○유상범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의견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손을 좀 드시고……

○유상범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우리가 특검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언론의 의혹 제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의혹 제기 됐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관계가 확인된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다 포함시킨다는 것, 그것은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서 한 번 언급되면 그것도 수사 대상으로 다 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들 모두를 아무 때나 나중에 돼서 그것도 다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을 여러분도 다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 이미 항고했잖아요. 항고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다 지시해 놓고서 이것 특검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항고했으니까 고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걸 수사할 텐데 느닷없이 또 여기다 특검을 다시 넣는 것, 그것도 우습잖아요.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수사…… 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삼부토건 이것 지금 몇몇, 다섯 명의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나온 삼부인데 삼부토건에 추가조작이 누가 있었습니까? 삼부토건에 추가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이 어디 조사 과정에서나 다른 데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넣어 가지고 무한정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수사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 이것 과연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그렇다면 추후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따져보고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가급적 새로운 내용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새로운 내용으로 좀……

○유상범 위원 이게 새롭지 않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소위원장 김승원 그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유상범 위원 그전에 언제 얘기했어?

○서영교 위원 의견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의사진행으로, 이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신과 관련한 건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다시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충분히 여야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요.

그리고 명태균 씨 건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에 대해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깜짝 놀랄 일들이고요. 명태군 씨를, 박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제기한 사람입니까? 우리랑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것 언론에 한 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매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보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그리고 인사 개입에서는 제가 어제 녹취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누구를 이 장관에 앉혀라, 누구를 저 장관에 앉혀라고 하는 인사 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최재영 목사가 봤을 때만 해도 ‘금융위원을 누구로 임명하라고요?’ ‘누구로 임명하세요’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금융위원 임명 관련한 현장을 목격한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장관·차관 임명—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이런 데 개입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국정 개입, 농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한 줄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빨리 통과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박균택 위원님이 조금 더 구체화하자는 이야기를 안으로 내셨는데요. 그것은 또 구체화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당 위원들의 얘기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화하자는 얘기를 ‘등’ 자를 넣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과시키면 좋겠고.

저는 또 특검 수와 그다음에 수사기간을 좀 늘리자는 이성윤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내놓은 안에 동의하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은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수사 대상이 좀 명확해지고, 원래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또 박균택 위원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여기에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명확화된 상황에서 제가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자는 주장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주진우 위원 아니, 하나만 더요.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저는 일방 통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마치 무슨 디테일하게 규정을 놓고 협의한 것처럼 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번에 재의결했을 때 그 법안보다 훨씬 더 저희가 반대하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더 위헌성이 강화된 법안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규정에 도이치파이낸셜을 넣고 안 넣고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항 전체가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단서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계속 남기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그냥 일방 통과시켰다라고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무슨 규정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규정한 것처럼, 그것은 쇼지 않습니까? 저희 의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박균택 위원 저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마치 그런 적은 없고요.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니까……

○주진우 위원 그래서 그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머리는 안 맞댔어요. 의견을 주고받았지.

○박균택 위원 짧게만……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아니, 주진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여야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이 의견 받아들이자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무언가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박균택 위원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의견이 타당한 것 같길래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쇼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지.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조정을 했다면 그 조정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추가 토론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의견 내고 그 의견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협의입니까? 이게 토론이 돼요?

○서영교 위원 아니, 여러분은 합의할 생각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은 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합의할 생각이 없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잠깐만 좀……

○유상범 위원 말 좀 합시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말 갑자기 그냥 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말씀 듣고……

○유상범 위원 서영교 위원님, 말 좀 합시다. 말하는데 계속……

○소위원장 김승원 내용을 좀 확정하는 절차로……

○유상범 위원 내가 아까 한마디 할 때는 난리를 치더니만, 무슨 말하는데 말 한마디 했더니……

○서영교 위원 끝난 것 아니었습니까?

○유상범 위원 한마디 했는데 결국 들어오셨어요.

○서영교 위원 끝난 것 아니었어요, 이미?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끝난 것처럼 쉬더만.

○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참 나……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이고, 전체회의에서 볼 때랑…… 여기서 또 볼 줄은 몰랐어요.

○서영교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

○소위원장 김승원 소위까지 보실 줄은 몰랐……

○유상범 위원 우리가 소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서 이렇게 또 틀 것까지는……

○서영교 위원 아유, 간사님이 나가시든지. 나야 여기 위원이에요, 정식 위원.

○유상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의안을 냈는데 방금 서영교 의원안이랑 박군택 얘기가 또 달라요. 서영교 위원은 그냥 가자, 박군택 위원은 조정하자 이렇게 서로 다른……

○소위원장 김승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금방 말 들어 놓고 말을 바꿔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박군택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그렇게 동의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진우 위원 국민의힘의 다른 얘기도 좀 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다른 얘기……

○주진우 위원 그 얘기만 듣지 말고, 국민의힘이 다른 의견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자체가 위현인데……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해 주시고……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그냥 정한 길대로 일방 통과시키려는 표결을 강행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소위는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곳인데 이와 같이 일방 통과로 표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의 어떤 마음이나 여러 가지 자세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의지로 일방 통과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좀 조정해서 합의될 법안들은 먼저 합의를 하고 처리하고 일방 통과할 것은 좀 뒤에 해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강행하거나 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 막을 힘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법안의 완결성이나 상대 당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라면 앞으로 이런 순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승원 위원장께 이미 제안을 했었고 앞으로 그러한 어떤 상대 당을 배려…… 크지 않은 배려거든요. 작은 배려만 하더라도 소위에서의 논의가 다른 법안에 있어서는 충실히 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할 때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 제가 마지막……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 마지막 토론 하시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하나를 예시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요. 이 법안이 지난번에도 사실 여러 차례 통과가 됐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조문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꼼꼼하게 따져 봤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아까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정치 상황은 늘 달라질 수 있고 여야와 집권당의 또 다수당의 입장은 서로 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이렇게 계속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다 모아 가지고 특검 수사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검찰도 있고 또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 특별검사라는 특별한 경우로 갈 때에는, 그래도 어떤 수사 대상을 특정할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구체성과 단서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들을 거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저런 객관적인 정도의 혐의는 있는 경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법문상으로도 명확하지 않고 구체성도 없을뿐더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것들이 정말 의혹 수준에서 그리고 어떤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문을 하나하나 뜯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면 모든 조문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특검법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종결하고 이렇게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저희 소위원회를 통과한 또 소위원회가 만들어 낸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도 그 운명이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수정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착잡한 마음이기는 한데 어쨌건 저는 우리 사법은 형평·공정하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이 정도 특검안은 통과를 시켜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의혹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법안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주셨는데요.

2조는 제2호를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그 문구를 첨가하였고요.

그다음에 5호에 ‘김건희가 그 일가와 명태균 등 비선 실세의 영향을 받아’ 그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11호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그 부분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그런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4조에 있어서는……

○**유상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야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예, 잠깐 좀 말씀드리고.

4조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라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6조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이성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철회했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

(11시49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2항 및 3항, 이상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범 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12시 반까지는 진행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이건태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 보시면 표적수사 금지 조항 신설하는 이건태 의원안이고요, 별건수사 및 표적수사 금지에 대한 위반 시 판사의 영장 기각 의무화라는 이건태 의원안이 있고요,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하는 정

청래 의원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차 법안소위에서 주요 논의 사항을 저희들이 핵심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등의 발언이 있었는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쪽, 표적수사 금지 조항 신설, 이건태 의원안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1차로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건태 의원안은 이른바 표적수사는 수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적수사 행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입법화 필요성 논의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여 금지할 것인지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행 제198조제4항에 이른바 별건수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적수사의 개념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의 별건수사 및 표적수사 금지 위반 시 판사의 영장 기각 의무화는 이건태 의원안입니다.

그 취지는 수사 비례 원칙을 벗어나는 수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영장 발부 재량과 의무화 관계 논의에서 영장 발부 재량은 사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게 현행법 규정이고 그래서 판사의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상당한 이유’라는 어떤 판단 규정과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서로 정합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정청래 의원안입니다.

그 취지는 별건수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준수사항으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형별법규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나 ‘부당’이나 ‘관련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처벌조항 위치의 적절성과 관련되어서 형사소송법은 일단 절차법으로 구성요건과 형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논의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사일정 2항·3항은 지난 9월 24일에도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지금 심사보고자료 1페이지에 그 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더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표적수사 금지 조항 관련해서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도 언급됐던 것과 같이 고발장에 여러 개 범죄사실이 있을 때 첫 번째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하면 이런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그런 결과까지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염두에 두신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 구체적인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일선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원치 않은 부분까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논의가 되는 법외곡죄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법외곡죄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충돌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삼고 양쪽으로 흘어진 조문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그 선언적인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화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수사와 별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영장 기각을 의무화한다는 부분은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부분이라서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건수사 금지 시 처벌조항 신설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벌의 범위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조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종전에 입장을 개진한 것하고 동일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법관의 영장 기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도입 필요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규정에서 의미하고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나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미 현행법에서 영장 발부 요소의 판단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법 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 198조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 사항인데 여기에 영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별건수사 금지 위반행위를 형사 범죄화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해서 별건수사의 정의와 금지되는 별건수사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사행위 및 행위자를 적시하는 등으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입니다.

저번이랑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누구로부터도 다,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게 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 조항들은 일반 국민들은 사실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고 하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주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주장하면서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항상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법의 영역은 위낙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당성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 규정에 어느 정도의 추상성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일일이 규정으로 규정화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규정화하게 되면 실질적인 판단에 있어서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뭔가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그런 표적수사나 진짜 문제 있는 별건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으면 그것도 또 양형에도 반영이 되고 영장심사 업무 할 때도 영장전담법관께서 그런 부분도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법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극렬히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그런 규정을 토대로 해서 여론재판 비슷하게 법원의 영장심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 관여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위원님 중에 토론……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지요.

전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이건 그냥 놔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전현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적수사의 경우에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 수사 비례의 원칙상 당연히 금지되는 유형의 수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표적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등의 수사기관들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고 입법으로까지 이르게 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검찰의 경우에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헌법상의 내재적인 원칙이 법문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킬 거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현실이 고려된 불가피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별건수사의 경우에는 협행법에 별건수사 금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되다시피 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건수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일종의 검찰권이 남용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좀 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이런 수사의 형태로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지금의 수사기관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사의 영장 기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영장 기각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지난번에 소위에서 표적수사 금지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규정과 관련돼서 그때 논의됐을 때 법문의 모호함 또 추상성 때문에 실제로 증거가,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A 범죄에는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압수된 증거 자료 중에 B의 범죄가 발견됐을 때 이 수사를 해야 되느냐 못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자 그래서 대안을 만들라고,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준비가 됐습니까, 표적수사 관련돼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저희가 법무부 내에서는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와는 의견 교환은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유상범 위원** 그러면 만들어진 것 있으면, 그때 이미 준비를 하기로 했으니까 초안 있으면 저희들한테 먼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시간을 주시면 오후라도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일찍일찍 줘야지. 왜 자꾸 그래요?

○**전현희 위원** 법무부가 일을 안 합니다.

○**서영교 위원** 회의 진행을……

제가 잠깐……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유상범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영교 위원** 빨리빨리 좀 끝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일단 그 얘기를 전달한 거고.

○**서영교 위원** 세월아 네월아 소위를 합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 정리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이 규정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절도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절도 혐의는 인정이 안 돼. 그런데 핸드폰에 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흔적이 보여요. 그

러면 핸드폰에 있는 마약 수사를 하는 것이 이 규정에 의하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안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위법·적법이냐의 논의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것이 일반인의 경우에는 덜해요. 그러나 주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만일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면 정치인이나 이런 것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 규정에 따르면 불법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별건의 증거 자료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나타났을 때 검사들은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들도. 그런데 그것이……

○서영교 위원 검찰이 절도를 수사하나?

○유상범 위원 아니지, 지금 딴 얘기, 마약 사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그 자체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든 이런 식으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마치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돼 버려요.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규정으로 인하면 추가 수사를 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처벌 할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규정에 의하면 금지되는 거거든요. 충돌이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규정에 대해서 그때도 이 문제 제기가 돼서 대안을 준비하라고 요청을 했었고 법무부에서 대안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다 기억하시잖아요, 전현희 위원님도.

○전현희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준비 안 해 와서 일을 안 한다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조문 자체가 구체적 행위, 상황……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증거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저기……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현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별건수사·표적수사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고 차관님도 인정할 겁니다, 아마.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식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하시는 바일 텐데, 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당연한 규정 같은 것들도 주의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법원에서도 막아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는 기대하에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막아 오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반복적일 수도 있고 주의규정에 불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규정은 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면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건태 의원님이 얘기하는 이 규정 이게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도 사건 수사하다가 마약사범이 드러나거나 또 절도사범 뒤쫓다가 피 묻은 칼이 나타나 가지고 살인 사건을 검거하거나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이 조항이 반대되는 조항이 됩니까? 못 하게 막는 조항입니까, 이게?

○법무부차관 김석우 해석상으로는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보통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의 사건에서는 검사가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균택 위원 나는 그 견해에, 이 규정을 읽어 봤을 때 절도 사건 수사하다가 피 묻은 칼이 발견돼서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옮겨 가는 것을 못하게 막는 규정이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보시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조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의 처벌규정이 부분들도 형소법에다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있느냐, 조금 체계가 이상하다라는 의견 제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조항이 생겨나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보니까 이런 조항까지 두려고 그러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조문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형법에 넣는 방법이든 뭐든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대안을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표적수사·별건수사 금지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처벌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아무튼 유상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 그다음에 조문의 위치가 어디로 가면 더 적절하겠다는 그런 의견, 그것을 전제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규정,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현재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 아까 지적한 그런 수사까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별건수사 금지 원칙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형사 처벌까지 규정을 하려면 조금 더 명확성의 원칙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지 말자 이 취지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아마 이 부분은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합리적인 근거’ 그다음에 ‘부당하게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안을 오늘 오후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소위원장 김승원 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유상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영교 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소위원장 김승원 안 하신 분이 요구하셔서……

○유상범 위원 이렇게 하자면서요?

○소위원장 김승원 안 하신 분이……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원칙을 세우세요. 처음에는 여기 했으니까 저기 민주당 하자고 그러더니……

○서영교 위원 아니, 하셨잖아요.

○유상범 위원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위원장님이랑 얘기하잖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합리적으로…… 하셨잖아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이랑 얘기하잖아요.

○주진우 위원 소위에서는 여러 번 발언해도 되지요.

○이성윤 위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왜 독점을 하십니까?

○서영교 위원 아, 욕심쟁이야.

○유상범 위원 우리 당 위원 쪽에서, 우리 당 위원의 입장을 말하는데 내가 생각나서 말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장동혁 위원 예.

○유상범 위원 소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하는 대로 기회를 주는 거지.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난번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셔서……

○유상범 위원 아니, 내용들이야……

○소위원장 김승원 제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장동혁 위원 우리가 법에 지극히 당연한 선언적 조항을 두면서 거기에 영장의 기각 또 처벌조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고 지극히 합법적인 수사까지 막게 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규정을 두면서 불필요한 해석에 의해서 불필요한 여러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적수사나 또는 부당한 별건수사가 금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조항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문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그리고 행정처와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법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문은 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수사의 단초라고 본다면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수사의 단초라고 본다면 수사할 수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개정안의 5항 별건수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의 어디에, 이 단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 묻은 칼이 나오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를 들어서……

○서영교 위원 이 조문 읽어 보세요. 5항 조문 읽어 보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일단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도 사건하는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특정인을 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 이게 바로 피 묻은 칼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건데 문제는 규정 해석상 그런 것까지 못 하게 되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을 좀 더……

○서영교 위원 이 해석이, 피 묻은 칼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이 규정 자체는 A라는 사건 하다가 혐의가 없으면 B라고 하는 것을 나아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A라고 하는 사건 하다가 혐의가 없으면 B 사건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B 사건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면 가능하지요. 오히려 지금 정황이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A 사건을 하다가 혐의가 없어요. 그러면 B 사건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수사의 단초로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의 단초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칼을 발견……

○서영교 위원 피 묻은 칼이라고 하는 것만 가능한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게 수사의 단초로써 수사 개시……

○서영교 위원 그런데 A 사건을 하다가 피 묻은 칼이 안 나왔어요. B 사건 가면 돼요, 안 돼요?

조금 전에 차관 이야기하시다가, A 사건 하다가 피 묻은 칼 안 나왔어요. B 사건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수사의 단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지요, 그런 경우는.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A 사건 하다가 단초가 없으면 B 사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현행법에도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수사의 단서가 없는데 수사를 하지는 않지요.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수사의 단초가 없음에도 이런 뜻이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이게 앞부분과 뒷부분의 범주가 다른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앞부분은 A라는 범죄 혐의가 없으면 뒤에 계속해서 범죄 혐의 찾는 행위, B라는 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문구를 잘 보세요.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두 개가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법무부차관 김석우 5항의 앞부분 사건과 뒷부분 사건은 다른 사건을 전제로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전제가 아니라 우선 다른 사건이지요, 당연히. 다른 사건이고, 앞의 걸 하면서 특정한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영교 위원 잠깐요.

가서 법조문을 더 읽고 오세요. 그리고 의도를 갖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여야 위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뒤의 내용에도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혐의가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혐의를 찾는 행위를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왜? 특정한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특정한 혐의를 계속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 너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서영교 위원 자, 됐어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안 한단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범죄 혐의가 있는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런 법은 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수사하는 방식을 지금 검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이 정도까지 하고……

법무부차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으면 일찍일찍 자료를 내셔야지요, 의견을 연결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김건희 특검법은 온 세상에 벌써 몇 번이 보도가 된 겁니까? 오늘 올라올 거라고 누가 얼마나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오지 않고. 또 이 법은 지난번에 논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오지 않고. 그리고 안 된다고 막을 자세만 갖고 온 것처럼 보이니까 법무부차관으로서 자세가 안 된 거고. 뒤에 있는 법무부 관계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고 오기 전에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면 이와 관련해서 또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도 하고 아니면 조정할 게 있으면 하는데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자료 하나 갖고 오지 않으면 이게 기관으로서 자세입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19대 말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기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핸드폰이나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 휴대폰이 결국은 두려움의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보면서 검찰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범죄 시점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누구와의 통화, 누구와의 카톡, 필요한 부분만 포렌식해서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압수하면 그 전체 자료를…… 법원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특정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검찰은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다 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에 수사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도 개인의 핸드폰을 뒤지면 거기에 얼마든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뭐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사를 하고 사법기관을 두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를 어떻게든지 다 찾아서 낱낱이 밟혀서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과 다른 것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문을 해 놨을 때, 검찰이 휴대폰 가져가고 컴퓨터 가져갔을 때 그것 일일이 다 뒤지는 것을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볼 것인지, 저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조금 두렵습니다.

제가 사법농단으로 저도 검찰에 여덟 번 출석해서 조사받았고 제 핸드폰, 제 외장하드, 노트북, 제 메일 다 압수수색해서…… 임의제출 한 것도 다 봤는데요, 제 외장하드 1TB 짜리 제출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나 얼마든지 받겠다. 대신 찾고자 하는 자료를 단어를 검색해서 1000개든 1만 개든 내가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다 동의할 테니 검색어만 넣자’고 했는데 그래도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고 하면서 파일을 일일이 다 열

어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 법관인데도.

일반인이 가면 어떨까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파일을 다 디지털 포렌식해 놓고 지금 뭔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단어들만 검색해서 그 자료만 가져가라고 하는데 파일을 다 열어 봐요, 폴더도 다 열어 보고.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범죄 협의가 드러난 경우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수사를 할 것인지……

저는 이 조문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도둑 잡다가 칼 나온 건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문제 되는 것은 압수수색해서 필요한 자료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어디에 필요한 게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이것 가서 내 평생의 모든 자료를 다 뒤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관련 사건 하다가 다른 범죄 협의가 드러나서 수사한다고 하고, 그걸 해서 또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압수수색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압수수색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수사 관행은 여야를 떠나서…… 제가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말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법원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발부하면서 그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원도 그 수사에 있어서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수사를 받아 봤던 당사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조문을 만든다 하더라도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법원이 좀 끊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별건수사, 표적수사나 불법수사는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기각을 통해서라도 끊어 줘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장동혁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정말 끝없는 꼬리 물기 압수수색, 탐색적 압수수색, 나올 때까지 계속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해야 될 김건희나 이 정권 관계자들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다가 피 묻은 칼이 나온다든가 마약 사건 나온다든가 이런 앞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요. 이 사건이 문제 되는 것은 아까 여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는 꼬리 물기 압수수색,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 한번 봐보십시오. 그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명확성의 원칙, 뭐 자꾸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절망합니다, 검찰이 왜 그럴까. 더군다나 법무부가 각성하고 이런 수사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영장 기각 조항 둔 것 이번에 국감 보셨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무려 98% 되는 데가 있어요. 90%가 다 넘습니다. 97%, 98%도 있어요, 서울 시내 법원 중에. 이러면서 무슨 영장을 통제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뒀다가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기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서 당하는 꼬리 물기 수사, 아까 여당 위원도 말씀하시잖아요. 끝없이 A 하고 안 나오면 B 하고, B 나오면 C 나오고, 그것도 휴대폰 전체 해서 안 나오면 다른 걸로 압수수색하고 계속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수백 번 당해 보세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조항을 둔 거예요. 단순한 예 하나 들어 가지고 이런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절박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겁니다.

법원도 정말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 싶을 정도로 영장 기각을, 통제를 했어야 되지요. 수십 년 동안 법원이 뭐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 농단 수사할 때 영장 기각률이 칠팔십 %였어요.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법원이 의지와 소신만 가지면 되는 문제예요.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법원이 신중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합리적이다, 부당하다, 자꾸 이런 단어를 쓰면서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요. 우리 형법 규정에 보면 부당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정·부당하다, 음란 이것보다 더 명확한 개념이지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아서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정말 국민들의 요구를 너무 모르시는 말씀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12시 반 정회 예정인데요.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일단 우리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대안을 먼저 제시하도록 했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미리 법원행정처와도 사전에 논의를 좀 해 주면 아마 오후에 논의가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과 관련돼서 이미 박군택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주의의무조항에 처벌규정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체계상 정합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명문화가 돼 있고 또한 그 규정을 위반해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든가 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기준 규정이 이미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에는 바로 해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규정상?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의미로 체계적으로 맞지도 않은데 형사소송법의 주의의무 사항에 넣고 또 기존에 중복되는 직권남용 규정이 이미 있고 그것이 훨씬 더 넓게 포괄되는데 이렇게 입법화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 부분도 법원행정처도 의견을 다시 한번 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2시 반에 속개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 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때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2항 및 3항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는 법무부에서 가져온 수정안이 있는데요. 표적수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그 밖에는 다 삭제하는 걸로 의견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예, 박균택 위원님.

○ 박균택 위원 이 얘기는 결국은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현재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어서 이 표현은 그대로 따왔습니다.

○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다른 혐의가 있다고 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법무부차관 김석우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거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가능하니까요.

○ 박균택 위원 그건 그렇지는 않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A라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B라는 범죄, 특히 또 더 중요한 범죄의 증거가 우연히 또는 새롭게 돌출되는 경우에 그 범죄를 새로운 단초로 삼아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A를 하다가 새로운 뭔가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거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B라는 범죄도 있을 거야’, 이번에는 안 나타나니까 또 ‘C라는 범죄도 있을 거야’라고 사료가 되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196조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박균택 위원 사료, 목표를 두고 저 사람은 반드시 범죄자고 내 손으로 잡아넣는 것이 내 인생의, 공직의 목표로 삼을 거야 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 따온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 박균택 위원 아니, 그 조문으로 충분치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엄격하고 더 구체적인 그런 규정을 두겠다는 것인데 여기다 대고 다른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안 두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리고 뒤쪽도 읽어 보시면 ‘그런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말도 부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것은 현행 별건수사 금지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4항과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이 규정으로도 충분히 그런 거는 못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박균택 위원** 뒤에 나오는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합리적 근거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건수사 규정에서 들어온 표현이거든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조항들을 보면 혐의가 드러나야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를 했었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목적 의식을 갖고, 기어이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 조항이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겠고.

혹시라도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현저한 증거가 우연히 새로 드러난 경우, 이 경우에 수사가 방해되지 않는 것만 두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5항 안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새롭고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경우는 예외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에다가 이 전제 자체가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혐의가 있다고 인정, 사료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박균택 위원** 그런 짓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유상범 위원**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이지요. 그건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마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박균택 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선의 광수대나 과거에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특수부 검사로서, 강력부 검사로서 목적 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해 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단순히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사건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과거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 왔고.

광수대가 1년, 2년씩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노출이 안 된, 좀 덜 유명한 피의자고 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노출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감시가 없는 범죄를 1년, 2년씩 나올 때까지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검찰이 해 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현상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이건 검경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간사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면 뭐를 해요?

○**소위원장 김승원**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요.

토론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발언권 주셨는 줄 알았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토론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 중에 특정 사건을 놓고 논의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시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절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부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마약 수사를 했다는 단서가 나오는 통화 내역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객관적인 물증은 아니지만 그런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수사는 정당화 되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수사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해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우리가 지금 수정을 한 거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정도,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제 그와 같은 법조문으로 인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인한 수사의 불법성의 논란을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양 기관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무부에서 우선 대안을 마련해 주셨고요.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이 정도면 오전에 논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정도 입장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유상범 위원** 첫째 그러면 먼저 다른 혐의,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이 문구 자체는 최소한 수사의 단서조차 없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를 테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약 수사를 거래했다,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마약 수사를 거래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러한 어떤 통화 내역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경우, 소위 완전히 심증만, 죄를 지었다는 의심만 갖지 물증이 없는 경우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떠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라는 것은 이건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표적수사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지금 형사소송법상 명확히 또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정인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죽어야지 범죄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이고.

그다음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뜻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단초가 있다 주장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면 아니다라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적어도 삼중의 장치를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괜찮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일단 저희는 그런 취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 저도 제 의견을 남기기 위해 좀 질의를 드리고 주진우 위원님께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참 형사소송법 198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는 것을 정말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1항이 불구속 수사 원칙, 2항이 인권 존중하고 비밀 엄수해야 되는 그런 원칙 그다음에 3항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해야 되는 것, 수사 목록 작성하라는 그런 원칙이지요. 그다음에 4항이 이제 별건수사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전단과 후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5항에 표적수사 금지 원칙이라고 이렇게 조항을 구성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가져온 것은 제가 보니까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료’라는 게 너무 수사기관의 생각이라는 뜻 아닌가요? 주관적인 판단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원래 개정하려고 했던 개정안에 보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객관성을 상실했다 그런 해석으로 보여지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앞에서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은 A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나타난 것 같고요. 여기서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범죄에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죄가 B라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수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앞의 전단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는 경우겠지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선언이고.

뒤의 부분,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이 너무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것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영장 발부 요건은 70조에 발부 요건이 다 나와 있는데 기각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조항이라거나 이런 게 없고 곳곳에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이 ‘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사님께 재량을 드리면 좀 법원행정처에서도 수용하기가 훨씬 나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영장에 관해서는 발부의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구속에 관해서, 구속의 사유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215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영장 발부에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는 형태로 현재 법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부 사유만 들어가 있어서 기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하는 것도 저를 맞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각하여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서 법원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판사께 재량을 드리면 영장전담판사가 그렇게 부담을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신 구속과 관련해서는 구속 사유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항에서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종래 형사소송법이 그와 같은 규정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의, 더군다나 수사의 준수 사항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법조문 형태로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4항·5항이 준수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라는 것을 취한다면 과거 70조 2항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와 같은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이 과연 적극적으로 영장의 사유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제출한 아니면 압수당한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뭐가 들어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계속 클릭해서 열어 보고 거기서 찾아낸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갖고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그렇게 심금을 울리는 호소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를 다 이 잡듯이 잡아내서 처벌하려고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되 그 적법절차는 법원에서 지켜 주셔야 되는데 법원에서 고려할 사유를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넣는다는 게 그렇게 법원에 무리를,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인데 지금 4항은 이미 들어가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별건수사에 대해서 과연 이를 방지할 그런 대책이 있느냐.

분명히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있고 저희가 사법고시 할 때, 공부할 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정말 빠져나오게 인식하고 있는 신념처럼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처벌조항을 일단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4항이 새롭게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조항에다가 금지 조항으로서 처벌조항을 두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제 생각이라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진우 위원님 혹시 토론한다고 하셨지요?

○주진우 위원 예.

저도 간단히 두세 가지 의견만 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별건수사, 표적수사 이런 부분 관련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사건이 별건수사여서 내가 검사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 자체도 통상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좀 남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영장 기각 사유,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규정이 좀 과도하게 되면 실제 민생과 직결되고 치안과 직결되는 여죄수사를, 민생과 관련된 여죄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여죄수사라는 게 경찰관이든 검사가 됐든 검찰수사관이 됐든 어떤 협의를 하다가 사회 방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추가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추가 수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몇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너무 규정을 세게 만들다 보면 이게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하고는 좀 괴리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은 방탄이 되고 국민들은 오히려 여죄수사가 안 돼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 지금 수정안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가,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다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쪽지와 현금이 발견됐다고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국민 입장에서 그것을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지 사실은 이 수사 단서를 보고 덮으라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안보다는 지금 수정했던 안대로 ‘다른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고요. 이게 타당할 것 같고.

처벌규정은 이게 수사상 준수사항인데 어떤 전문직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내가 절차적으로 보장해야 될 것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처벌규정을 두면 역시 수사는 위축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요.

영장 기각 사유가 문제인데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좀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 체제하에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영장을 발부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장이 지금 판단에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당연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영장 할 때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다른 규정들도 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부터 시작해서 온갖 규정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관의 자유심증과 판단을 좀 방해할 수가 있고 또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고 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절차상 의무규정에 들어가면 그 의무규정은 적

법절차로 녹아들어 가서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가 지켜졌느냐 하는 것은 영장전담판사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2항·3항은 두 분이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토론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면 짧게 해 주시고 저희가 성폭법 쪽으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서영교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법무부가 가지고 온 것에 의하면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사료’라고 하는 말을 법적인 용어로 좀 쓰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것 관련돼서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답을 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196조에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수정 제안을 좀 할까 싶은데요. 여기 아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객관성을 좀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취지는.....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사료라고 하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무런 단서도 없이 막연하게 ‘혐의가 있을 거야’ 이것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뒤에 합리적 근거라는 걸로 충분히 표현이 된다고 봤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의구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만한 증거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런 표현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서영교 위원**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사료할 만한 증거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러면 객관성이 보강이 되고 ‘증거 또는 자료’라는 표현은 198조 4항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4항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을 하는 건데 객관성이 부여된다는 의미에서는 표현상으로는 약간 더 타이트한 것은 있는데 취지는 같습니다만.....

○**서영교 위원**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사료할 만한.....

○**서영교 위원** 사료..... 사료가 무슨 뜻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사료가 판단한다는 건데 196조 1항에 있는 표현을.....

○**서영교 위원** 그러면 판단으로 하세요, 판단.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상관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에도,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법무부차관 김석우**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객관성이

좀 담보가 되니까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하고……

○서영교 위원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성을 보강할 수 있는 표현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취지는 같은 취지인데 의구심을 좀 표현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옛 표현이라서……

○서영교 위원 그래서 다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했어. 아니하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증거 또는 자료. 왜냐하면 ‘증거 또는 자료’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4항에 등장하는 표현이라서 그대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 4항에 등장한다는 건 현재 법, 현행법.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현행법 198조 4항에 보면……

○유상범 위원 확보된 증거나 자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서영교 위원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법무부차관 김석우 있는 표현이라서 ‘증거 또는 자료’라는 표현을 5항에다 그대로 표현을 하면 객관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 원래 현행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건의 자료와 증거가 확보됐어도 이걸로 진술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증거 또는 자료’라는 표현 자체가 4항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5항에다가도 그 표현을 두면 4항, 5항이 서로 조화롭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넣는 방안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덜 끝나신 거지요?

○서영교 위원 저는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에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그 부분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주관적인 걸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단서가 없지만 나는 판단한다’, 수사를 강행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 하셔서……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있어요, 자료도 있어요, 다른 사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과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것은 4항으로 포섭이 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4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과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다른 사건을 판단할 만한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특정인을 목적으로 계속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요, 내 말은.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다른 사건의 증거와 자료가 나와도 진술과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져온 말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앞의 말에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건의 판단할 만한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특정인을 계속 수사해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앞에 현재 현행법도 다른 판단을 할 만한 자료와 증거가 있어도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별건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형태로 자료와 증거가 나오면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에서 후퇴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4항에, 그걸 내세워서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요.

○**유상범 위원** 4항을 완전히 착오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취지가 다른 겁니다.

○**서영교 위원** 뭐가 취지가 달라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4항은 그걸 토대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고, 5항은 강요하는…… 강요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객관적인 단서도 없이 막연하게 다른 혐의가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려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표현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거 또는 자료’라는 말을 넣으면 아무런 객관적인 단서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같이 수정 제안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이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굳이 이걸 안 넣고 ‘증거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되지 막연히 생각하는 걸 넣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원래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원래 표현이 그래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라는 게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무런 객관적인 단서도 없이 수사하는 것은 이걸로 막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막으려면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 드린 겁니다. 사실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표현의 문제인데요.

○**서영교 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가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제가 이것 좀 정리를 하면……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 표현을 다 하신 것 아닌가요?

○**이성윤 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이제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성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할 수 있도록……

○**유상범 위원** 말하고 있는데 자르고 그래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성윤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셔서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유상범 간사님 하시는 걸로.

○**유상범 위원** 같은 간사끼리 너무 심하네, 위원장보다 더 심해.

○**소위원장 김승원** 발언 기회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오전에 우리가 원래 원안이었던 ‘정당한 수사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혐의가 없음에도’ 이것하고, 수정안으로 만든 첫 번째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두 개로 나눴는데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게 수사 중인 사건에만 했거든요. 사실은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제기해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범죄 혐의가 없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를 넣었잖아요. 이런 것은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없다고 느끼는 강도는 수사하는 사람마다 엄청 차이가 있어요. 또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원안이 더 훨씬…… 오전에 고친 것은 법률을 너무 좁혔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대개 지금 정치적인 사건에서도 수사 끝난 사건을 다시 제기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들었던 많은 예는 긴급 압수수색한다든가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정당한 수사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범죄를 규명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또 수사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 건데 이 사건은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래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수사한 결과 안 됐으면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긴 원안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처벌규정 삭제 부분을 두 기관에서 합의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약간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야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전 내내 저희가 논의했던 것이 됩니까? 아무리 선언을 해도 안 지키니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원칙규정 만들어도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냥 법원에다 맡겨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검찰이 별건수사 하지 말라고 아무리 법 규정을 만들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자동자판기처럼 발부하면 차라리 영장발부권을 검찰에 주세요. 뭐 하리 법원에 청구합니까? 선언만 계속하는 형사소송법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오전의 원안보다는 오후 수정안이 훨씬 후퇴한 안으로서 저는 이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오전 중에도 5항 개정안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을 놓고 보면 새로운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 그 수사 단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죄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규정 자체로 여죄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규정으로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런 것을 주의의무규정으로 넣어 버리면 결국 수사 절차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고소·고발이 또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우리가 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고 또한 이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 1회 논의할 때도 이 규정에 대한 같은 논의가 있어 가지고 대안을 양 기관에서 만들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대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의 규정과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라는 규정에 사실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규정 자체에 사실은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적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대안으로 나온 규정들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여죄수사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자 그래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지난번 우리 처음 서로 토론했을 때 그것이 무의미해지고 오전 토론도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 사유를 기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종의 기각 사유로 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건데, 그렇다면 70조 2항에서 과거에 우리가 영장 발부 요건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를 했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추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건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넣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사소송 체계에서의 정합성도 잘 지키고 주의의무규정에 영장 발부를 넣는 형사소송법 체계의 모순점 이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별건수사에 대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이것이 고발돼서,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고발돼서 별건수사를 해 가지고 처벌을 한다든가 하면 그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권남용죄에 당연히 포섭이 됩니다. 여기 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항을 넣고 안 넣고보다는 이 조항이 없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의무조항이 있고 주의의무에 위반해서 별건수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합리적 이유 없이 새로운 별건수사를 해서 만일 그것이 처벌을 받았고

그것이 당사자나 또는 제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법에 위반한 별건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우리가 여기다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2항, 3항은 다른 두 분 위원님이 오시면 의견을 듣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별건수사의 의지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다른 범죄 혐의를 꼭 보고 싶어 하는, 오히려 그런 의지가 너무 드러나고 그동안 못 했던 것 더 명문화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유상범 위원** 이런 거예요, 서영교 위원님. 마침 이 선수가 절도라고 신고가 왔어.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용에 무슨 살인 같은 혐의가 나와.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성윤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정당한 절차와 수사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건 정당한 수사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5항에 보면……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서가 없을 경우에 가는 거지.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님 원안에 의하면 그런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찾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지 새롭게 우연히 돌출되는 현저한 증거를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항을 지금 법무부 의견대로 사료될 때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기존의 198조 4항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강화된 조항을 넣자는 건데 법무부 의견대로 넣어 놓게 되면 다시 4항 시절로 되돌아가 가지고 5항을 만드나 마나 그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태 의원의 원안을 이대로 놔두고, 여기 원안에 의하면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사의 공백이 안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처럼 이 부분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절도범에다가 살인범 얘기는 누구도 다 동의해요. 그 사례가 아니에요. 경제계에 가지고 이 사건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자료를 다 뒤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넷에 넣어서 다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걸 찾아 가지고 약점 하듯이 쥐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법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 보러 들어가서 이것 다 봤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걸 4항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서영교 위원** 그걸 다 갖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정리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니까 변호사비 대납 건을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변호사비 대납 건 갔는데 다 무혐의잖

아요. 다 없잖아요, 내용. 거기서 이제 쌍방울로 갔다가 방북비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도 그게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번에 보니까 어제 제가 찾았지만, 제가 다 가서 사진이랑 찍은 거예요. 무슨 환이네 육회집에 가서 육회 사다가 검사실에 갖다 바치고 이런 내용들 다 나오고……

어제 얘기는 중요한 건 그것 아닙니까?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돈 받았다고 그러는데 김용이 자기 핸드폰에다가 구글 타임라인을 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는지 위치가 다 나왔대요. 그런데 김용이 돈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증거를 다 댔는데 이 타임라인에 유동규가 돈 어디서 줬다는 날 김용은 거기 없다는 타임라인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했던 건 대장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관계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오고, 마찬가지로 변호사비 대납이 와서 수사 다 해 가지고 자료 다 끄집어서 여기까지 오고, 이것은 정치권의 사례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딱 가지고 오기를…… 아니, 그 수사 중인 사건이 안 되면 더욱 끝내야지. 지금 말씀처럼…… 내가 아까는 혼혹당할 뻔했어. 절도 사건에 피 묻은 칼이 나오면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나? 피 묻은 칼이 나왔으면 이것 가지고 다시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아닌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대고도 자백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한술 더 떠서 다른 사건의 범죄에 판단할 증거가 나오면 계속 수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저는 있는 수사만이라도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 다 보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범위를 넓혀서 계속한다면 이것을 법원에서 제지시켜 줘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법원도 이성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법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것 다 무죄 났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그때 영장 발부율이 10%대였을 걸요, 11%인가?

○**이성윤 위원** 11%.

○**서영교 위원** 11%. 그런데 웬만한 다른 영장 발부율은 다 98%가 넘어요. 이런 걸 한번 돌이켜 볼 시기인데 법무부가 가지고 온 것은 아차 하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죄송합니다. 끝났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논의 과정은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오시면 의견을 더 청취하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요.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8)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4)

(15시24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8항부터 18항 및 39항, 이상 12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때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미 다른 안에서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은 양형인자로 볼 수 있는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2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입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비스 제공자는 성격상 방조범으로 보이므로 법정형을 낮출 필요가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즉각적인 조치’라는 문구는 모호한 측면이 있고 서비스 제공자를 이 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들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한 경우 즉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게 하

여 영상물의 국제적인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대상 범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와 명예훼손 등의 죄는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와 논의를 하여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 쪽과 수정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논의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사항입니다.

지난 소위 때 위장수사 조문에 대해서 N번방 사건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법원에서 합정수사에 대해 기회제공형은 가능하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일으키는 범의 유발형은 위법하다고 하는데 광고는 속성상 의사 없는 사람에게 판매 또는 구매의사를 일으키는 등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소지와 판매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위장수사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통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장수사 방법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주로 10대가 입건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적발·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광고가 인정될 경우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자를 대량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위장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대부분 범의 유발형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것처럼 먼저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성범죄의 수사 특례 등입니다.

25조의2입니다.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신분비공개수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은 11조, 성착취물 제작 및 수입 관련된 범죄인데 이것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칠승 의원안은 14조의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조은희 의원님은 14조와 14조의2—14조의2는 딥페이크 영상 가공물 의미합니다—박은정 의원안은 14조와 14조의3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은 14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범죄로 하였고 수정의견으로는 제14조 및 14조의2의 범죄로만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 특례가 제한적·예외적인 수사 방법이라는 점과 그리고 지금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가별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사 특례 사항과 그리고 개정안들이

나온 걸 고려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2항입니다.

2항은 첫 번째는 신분비공개수사를 말하며 두 번째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한정 사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16쪽을 보시면 신분위장수사 방법에 대해서 1호와 2호, 3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 2호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대부분 의안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3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권칠승 의원안은 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대한 소지, 판매, 광고 그리고 조은희 의원안도 소지, 판매, 광고, 박은정 의원안도 소지, 판매, 광고, 서영교 의원안도 소지, 판매, 광고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일단 제한적·예외적 수사 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입법례 그리고 개정안이 나온 것과 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와 지난 소위 때 논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일단 그 대상에 대해서는 14조 제2항의 촬영물과 14조의2제2항에 대한 편집물과 그다음에 청소년성착취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지,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지난 소위 때 광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있어서 일단 소지와 판매만 할 수 있는 걸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수사 특례 절차 중에서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해서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만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측과 얘기해 본 결과 그리고 입법례를 고려해서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신분비공개수사는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22조의4(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라는 내용을 저희가 제시해 드렸는데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청소년보호법에 25조의4의 내용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 달 시행 예정인데 이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22조의6은 청소년보호법과 내용이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30쪽입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제22조의6(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검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경우도 통지하는 내용과 시간을 유예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후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청소년보호법 입법례와 그리고 개정안이 들어온 것과 그리고 수사 실무 등을 고려해서 수용하지 않는 걸로 일단 수정의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5조의7, 34쪽입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내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쪽의 비밀준수의 의무도 기존의 청소년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7쪽에 22조의9(준수사항)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제시드렸습니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현행 시행령에 들어 있는 내용을 일단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는 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 또는 위장수사를 할 때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교 의원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의10(면책)은 기존의 성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이고, 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도 기존의 성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쪽, 별칙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성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이고 정부 측과 협의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도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여기까지.

○**유상범 위원** 오늘 위장수사 이것만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요? 지난번에도 다른 부분 논의가 됐다가 다른 부분은 논란이 많아 가지고 채택 안 하고 이 부분은 채택 여부를 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오늘 논의는 이것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위장수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삭제하는 부분, 그것 2개 정도가 그때 얘기되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김승원** 오늘은 성폭법을 완결시켜서 소위에서는 통과시키고 싶은데요. 일단은 양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끊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다른 게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영상물 등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 도입입니다. 47쪽인데요.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유정……

○**서영교 위원** 앞의 것만 하기도 벅찬데 앞의 것 얘기하고 이렇게 또…… 뒤의 것 마저 들어요?

○**유상범 위원** 일단 듣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유형입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위장수사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응급조치는 다른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은 선택하는 문제니까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응급조치까지 들어 볼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의안에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안으로 제시된 세 가지 안 모두 ‘경찰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관리·운영자에게 직접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또 처벌 경고 그다음에 절차 안내, 상담소,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쪽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었고, 4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최근에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정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법경찰관리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주는 것은 현재 경찰은 수사에,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 방통위·방심위는 삭제·차단이라는 전문성을 고려한 역할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방심위 심의를 거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되는 제도와 충돌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만 그 밑에 보시면 38조의2가 지난 9월 달에 여가위에서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는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차단 등을 요청을 하고 사경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내용 그리고 상담시설,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할 때 이게 방통위를 통해서 했던 기존 제도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아청법에서도 사실은 방심위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그 제도가 그대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고 사법경찰이 하게 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온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보류했던 조항이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오늘은 신분위장수사 그 부분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오늘 조문별 검토, 하나하나 결론을 내 주시고, 하나하나씩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그러면 5페이지 봐 주시면,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해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은 지난번 소위 때도 이것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유상범 위원** 예, 앞의 것은 다 채택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입니다.

대체로 요지 보면 찬반이 좀 있는데요. 7페이지 보시면 반포 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에 저희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부분 안에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전기통신사업법에 지금 삭제 요청을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돼 있는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9페이지에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9페이지 몇 조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그 박스에 보면 95조의2(별처)에 줄 쳐져 있는……

○소위원장 김승원 14조의2에 따른……

○유상범 위원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게 행위 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들입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예, 부가통신사업자들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 부가통신사업자까지.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사실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주의의무, 그러니까 응급조치 불이행이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거기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성폭법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것은 여기서는 저희가 채택하지 않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십시오. 9페이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의견을 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지난번에 의견을 똑같이 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법이 국민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같은 조항을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한번 기관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법무부부터 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조의5에 보면 이리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인식한 경우 자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보면 1호, 2호, 3호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대상물은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정보통신망법을 보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이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특별법 두 곳에 이미 관련 규정이 춤춤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성폭력법에 별도로 둘 실익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의 의원안을 보게 되면 반포를 한 자인 본범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보면 방조범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본범과 방조범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종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게 조금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정보통신사업자인가요? 그 경우에는 약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영업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회사들도 있어서 그래서 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수많은 게시물을 전부 다 검색해서, 검사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95조의2(별칙)에 1의2항 같은 그런 면책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님께 한번 묻지요.

지금 개정안 내용과 그다음에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조항 내용이 좀 틀린 게 있나요?

제가 볼 때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주의의무를 굉장히 엄청나게 부과하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박동찬** 그런데 여기 14조의2에서는 사실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이라고 구성요건이 조금 모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면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기 정보통신망에 이런 음란물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의무를 갖다 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별칙)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즉각적인 조치와는 조금 다른……

○**전문위원 박동찬** 삭제, 접속 차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위원장 김승원** 시기 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게 조금 느슨한,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을 준 것 같고.

○**전문위원 박동찬** 또 아까 차관님이 설명하셨듯이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처벌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하지 않으면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한번 읽어 봐도 14조의2 안은 굉장히 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고 이것 쉽지 않은 그런 조항인 것 같아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상범 위원** 행위 당사자가 아닌 데다가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좀……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모든 게시물을 다 검색해서 음란물인 경우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불가능하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저……

○**소위원장 김승원** 예,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속기록의 약간 정정 차원에서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후자인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는 거는 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만 국한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빠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이런 유형이 유통되는 거를 규제하는 법률이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허위 딥페이크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데 아까 정리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개정 작업을 해서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유상범 위원** 박균택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지요?

○**박균택 위원** 예.

○**유상범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대상 범죄 추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지난번에 토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지난번에도 논의해서 이것은 채택이 어렵다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도입 문제입니다.

우선 22조의2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정의견은 법무부와 행정처가 전문위원이랑 같이해서 다시 정리를 하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 입장을 한 하지만 말씀을 드려도……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조항별로, 하나씩 조항별로 검토하면서 기관 의견을 들어 보는 형태로 진행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22조의2에 대해서 우선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기관 의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이게 소지, 판매가 있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2조의2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22조의2, 14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 법무부에서는 경찰과 좀 더 협의를 해서 혹시 일종의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경찰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도입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범죄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보다는 좀 더 넓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도 포함하는 박은정 의원님 안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상 범죄 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14조의3까지 포함해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게 저희 의견이었고 전문위원안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된 것은 경찰 입장을 반영한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신고가 됐을 때 그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도 포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 좀 더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도 대상 유형에 넣자는 게 저희 안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4조의3.

○전문위원 박동찬 14조의3은 자료에.....

○소위원장 김승원 자료에 없어서.....

○전문위원 박동찬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협박·강요죄라는 것은 명백히 오프라인에 피해자가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실익이 있는가요? 그것 좀 의혹이 드네요.

그러니까 위장수사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판매행위를 우리가 단서를 찾고 판매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이는데 협박·강요 행위는 사실상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협박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협박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분을 가장해서 접속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함으로써 증거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불법촬영물이나 이런 걸 최소한 소지는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포함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전문위원안과 같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사는 가능한데 다만 이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주장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불법촬영물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기존의 14조와 14조의2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좀 더 완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협박죄까지 두면 논란의 소지가 없겠다라

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들어가서 반포하는 행위를 직접 접촉할 수는 없는데 온라인상 협박·강요받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사실은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를 하면 판매자나 배포자를 수사상 찾기 쉽다, 확정하기 쉽다는 차원에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걸 요청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꼭 신분 비공개로 하는 게 맞나?

○**주진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건 넣어도……

○**유상범 위원**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넣어도 될 것 같은 게요 사실은 지금 딥페이크가 피해자도 모르게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협박도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를 협박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도 협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 조직이나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실제 범인을 특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딥페이크를 단순히 소지하는 것도 처벌하는데 이걸 가지고 협박한다고 그러면 그건 훨씬 죄질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포함을 시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렇게 하면 외려 주범을 찾거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22조의2 1항에 14조의3의 범죄를 넣어서 수사기관이 14조의3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사실 14조의 1항, 2항보다 더 중한 범죄로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면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나중에 광고 부분에서도 한 말씀 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을 뒤서 이미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성폭력법에다가 이것을 따온다고 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있는 규정과의 정합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장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미 광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논의를 할 때 소지, 판매를 넘어서 광고를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합성의 문제를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14조의3을 이 부분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14조의3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정합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보충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 나중에 규정해도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청소년정보보호법에 그걸 넣으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넣으면 정합성이 맞춰진다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넣는 방법으로 하거나, 여하튼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옳은 말씀입니다.

22조의2 1항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리고 법무부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는 대상 범죄 부분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행위태양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항 자체는 22조의2의 2항에 이어진 부분입니다. 1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부분, 일단 행위태양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원래는 아동·청소년법에는 소지, 판매, 광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한 바로는 소지, 판매, 광고 플러스 제공까지 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공은 무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소지, 판매, 광고로 하다 보니까, 판매 같은 경우는 유상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려면 제공이라는 것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안이었고.

또 한 가지가, 이건 경찰 측 의견을 반영한 건데 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이 어떤 영상물이 있다고 상대방에게 알려 주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킨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외에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음란물이 적용이 되면 유용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물이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가능하고 실존 인물일 필요가 없습니다만 성폭력법상에 있는 불법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추가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되잖아, 당장.

○**법무부차관 김석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태양에서 제공도 추가하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위장수사로 활용하는 대상물에 정보통신망법의 일반 음란물을 포함하게 되면 성폭력법에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음란물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태양에 제공을 추가하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단이 되는 영상물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을 포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수정안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원래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한 안이고 전문위원회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라 저희 의견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3호를 개정하자는 얘기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거기다 추가하자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수정안에서 3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 정리를 해 줘야

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3호에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소지, 판매 외에 기존에 광고가 있었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광고도 유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안에도 없었던 제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지, 판매, 광고에다가 제공이 포함되는 것이고 대상이 되는 영상물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14조 2항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보시면 22조의2의 2항의 3호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의견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청법?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22조의2, 그러니까 17쪽 넘어서 18쪽에 소지, 판매만 되어 있는데 소지, 판매, 광고, 제공까지 행위태양을 2개를 더 넣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대안을 만든 것을 일단 전문위원회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혹시 배포가 되면 위원님들 보실 때 좀 편리할 수 있어서……

○소위원장 김승원 배포된 거 보시고 또 의견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배포를 해 주실래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참석하셨고 혹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제한을 두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일단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지난번에 논의가 된 것과 같이 만약에 경찰이……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아니, 몇 조 몇 항에 이런 것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보면 안전장치가 몇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언조항이 22조의 몇 항이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9입니다.

37쪽을 보시면, 저희는 제22조의9(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 관련 법령 준수하고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이런 걸 따라야 된다고 22조의9를 신설했고요.

차관님, 이거 외에 다른……

○법무부차관 김석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에 있는 준수사항을

법률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 대안이 누구의 대안입니까? 누가 내놓은.....

○전문위원 박동찬 저희가 법무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수정의견은.....

○전문위원 박동찬 수정의견이 저희하고 법무부.....

○박균택 위원 수정의견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이고 대안은 또다시 법무부랑 상의한.....

○전문위원 박동찬 당초 대안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다가요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 의견 협의가 동의까지는 안 가 가지고 일단 저희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 과정에서 법무부 쪽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안이 전문위원님들의 최종 의견.....

○법무부차관 김석우 대안은 애초에 저희 법무부 대안입니다.

○박균택 위원 법무부의 의견입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대안이고요 수정의견이 전문위원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수정되기 전.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서영교 위원 법무부 대안이기도 하지만 경찰하고 논의한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다 협의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가 다 들어 보니까 경찰하고 논의해서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얘기를 해 줘야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지금 나눠 드린 문건의 3쪽, 세 페이지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영교 위원 천천히 좀 하세요.

어디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나눠 준 것의 세 번째 페이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대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유상범 위원 3호 규정을 보완한 내용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정보통신망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란물입니다. 이것 추가하고 기존에는 소지, 판매, 광고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공을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공을 추가할 때는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걸로 해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갑자기 좀 더 복잡해지네요, 단서를 달아 갖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결과적으로 만약에 성착취물 등을 판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서 판매를 할 때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 안 그러면 있으면 성인이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국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영상물을 위장수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상대로는 위장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인가

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을 도구로 한 판매 행위나 제공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미성년 관련된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나 판매하면 그 미성년의 인권이 너무 침해되니까 아예 합정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경우는 이런 유형 말고 다른 수단으로 접근해서 하는 건 가능한데 그 영상물 자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건 혀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광고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단서 규정에?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광고는 그게 이전되는 건 아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를 뒀는데……

○주진우 위원 영상 자체가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다만 이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는 광고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행정처에서 아까 했던 게 이 광고를 넣어야 된다는 이 얘기였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아청법에 이와 관련된 위장수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폭법에 이 부분을 새롭게 규정을 한다면, 사실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를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동이건 성인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여기서 새롭게 규정을 둔다라고 본다면 아청법에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종전에는 광고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청법에는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성폭법에는 광고가 빠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충돌 부분이 생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위장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성폭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규정을 하신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성폭법에서 포함적인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충돌이 생기는 아청법 관련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청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성폭법으로 옮기는 방안을 저는 생각했는데 그걸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소지, 판매, 광고가 아청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성폭법으로 옮기는 건 어렵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대로 옮기게 되면 지금 아청법에 있는 부분과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청법에 있는 부분을 빼거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청법에 있는 그 위험하고 새롭게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성폭법의 범주가 서로 달라지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그대로 옮기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런데 소지, 판매, 광고가 종전 아청법의 규정인데요 지금

이것을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에서는 좀 더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합성만 좀 맞춰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소지, 판매, 광고를 그대로 행위태양으로 성폭법에 그냥 같이 차용해서 옮기는 것이 간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런데 법무부에서 제공하신 의견을 보게 되면 제공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만 단서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청법과의 관계를 한번 고려해서 심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만일 그렇다면 고려해서 한다면 지금 취지는 어느 방면으로 정리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려를 하는데 현재 소지, 판매, 광고는 일단 행위태양이 같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유상범 위원** 다만 이제 제공이 들어갔는데 이 제공에 대해서 아청법에는 그 제공 규정이 없긴 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유상범 위원** 없지만 여기 성폭법에 제공 규정이 있다 그래서 아청법의 규정과 정합성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별도의, 그러니까 아청법의 규정에서 규정된 것과 이것에 제공이 규정된다 그래서 아청법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기는 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무 문제는 없는데 다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정합성의 문제입니다.

○**유상범 위원** 두 규정에서 어느 하나는 제공이 들어가고 하나는 제공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규정이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규정이 약간 서로 다른 정합성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긴 한데, 이 규정을 함으로써 아청법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위장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전 정합성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제공을 넣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소지, 판매, 광고까지는 일치하실 것 같고.

○**서영교 위원** 제공이 뭐예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유상범 위원** 무상, 무상.

○**주진우 위원**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제공이 소지에 해당되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지.

○**서영교 위원** 갖고 있어야 제공이 되겠지요, 어떻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소지가 전제가 돼야겠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소지, 판매, 광고라고 했는데 그 법을 만들 때는 무상으로 줘서 어떻든 올가미로 씌우는 틀을, 판매는 하지 않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때 판단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제공이 안 들어갔으니 이번에 제공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사실 소지하고 있는 게 소지하고 있어야 제공을 할 수 있고 제공받아야 소

지가 되는 거니까 소지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기 때문에 소지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제공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확하네.

○박균택 위원 그런데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박균택 위원 지금 우리 수정의견에서 광고를 뺐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광고를 뺀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들, 개별의 소비자들 또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범의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을까 봐 이 광고를 뺀 것일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광고를 넣는 그 심정은 또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건 이해하는데 그런데 뭔가 제한을 가하려면 광고 쪽에다 제한을 가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제공이나 판매에는 제한 규정을 두고 광고에는 제한 규정을 안 두니까,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제공이나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광고는 영상물 자체를 게시한다기보다는 약간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알리는 거라서 좀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위장수사를 통해서 전혀 범의가 없는 사람이 딱 그 거래 건으로 형사처벌된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위장수사 해서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상물은 하나도 없고 당해 경찰관이 제공한 게 유일한 거라면 그건 전형적인 범의 유발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처벌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판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여러 개의 영상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회 제공형이니까 적법한 수사가 되는 것이고 그 거래 건 자체는 사실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거래를 통해서 형사처벌될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부분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광고를 통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처벌되고 이런 사례는 없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가요?

○서영교 위원 많이 바뀌었네요, 지난번의 주장하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실태를 좀 더 검증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의문점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광고를 접하고 범죄로 빠져드는 사람은 어떤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광고를 통해서 대상자가 접촉이 됐고.

○박균택 위원 그리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대상자를 상대로 확인해 본바 여러 가지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기회 제공형이니까 처벌돼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박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소년이 그 광고를 보고 ‘내가 매입할게요’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주로 문제되는 유통상들이라든가 전문꾼들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광고에다가 그런 도덕성 시비라든가 범죄자를 국가가 만든다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배경 설명을 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중간 유통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넣어 줘야지 이걸 안 넣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국가가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차관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처벌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매입은 했는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매입은 했는데, 중간 유통상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소지자들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난번에 논의 한 번 했었는데 광고가 위장수사하면서 광고를 해야…… 한번 네가 해 봐라, 시험을 한다는 거지요, 테스트를. 그 때의 광고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경찰청에서 나오신 관계자분 얘기 한번 들어 보면 어떨까요?

○**서영교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장수사로 인해서 범의가 없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두 분이 제일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경찰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단 한 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범의가 없는 자에게 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에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다른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는데 실제로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봐서 그 얘기를 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나와서 말씀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위원장님이……

○**소위원장 김승원** 질의를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위장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텐데 그것이 지난번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 사례가 지금 해 오면서 있었는지, 아 청법에서 위장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성폭법에 넣는 것이 괜찮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과 그런 사례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심의관 홍석기 경무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장수사를 해야 될 범죄는 조금 전에 정리를 해 주

셨습니다. 그래서 14조, 14조의2, 14조의3까지 지금 확대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위장수사를 하는데 현재 위장수사의 방법은 신분증 위조해서 가져갔는데 이놈들이 그걸 못 믿고 ‘야, 너 위법행위 한번 해 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 중에는 ‘너 갖고 있어’라는 소지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제삼자에게 줘’라는 행위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현재는 ‘유상으로 주고 와’라는 판매행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용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주고 와’라는 제공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좀 추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외에 광고행위를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광고는 소지나 또는 유상으로 주는 판매 또는 무상으로 주는 제공하고 달리 거기에는 어떤 그 사람, 불법 촬영된 그 사람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광고라는 것은 어디어디 사이트에 가면 그런 걸 살 수 있더라라는 내용을 알린다는 측면의 광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가 일단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광고를 보고 그 사이트에 가서 실제 구매한 자를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아청법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범죄 유발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포괄적 조항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의견에 의하면 그것을 법률에 주의사항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의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옮긴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안전보완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진우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광고에서 만약에 미성년의 섬네일 같은 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사이트에 가서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광고지만 그 영상 중의 하나를 섬네일로 딱 붙여 가지고 이 영상 사실 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랑 영상에 합성된 것 사람 얼굴이 딱 나온다고 하면 위험성은 동일한 거 아닌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광고에는 내용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광고이고요. 거기에 내용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제공 또는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공에는 분명히 그 영상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영상물을 어디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차이점도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일 겁니다. 두 개의 행위태양에 차이가 있다는 게,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게 실제 불법행위 영상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피해자의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전히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걸 보고 와서 사는 자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주의사항에 그런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런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22조의6 해 가지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를 처벌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뒤의 청소년성보호법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완장치는 앞쪽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에 가면 자세하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방어해라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다시 똑같이, 청소년성보호법이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잠깐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아까 광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판매나 제공은 상대방을 가정하면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상대방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대로 미성년 관련된 영상에 섬네일을 딱 붙이면서 이런 유의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사이트로 찾아오세요’라고 광고했을 경우에. 그건 판매도 아니고 제공도 아닌데 광고로 볼 수 있고, 광고이면서 또 미성년 여성 사진 한 장이라도 섬네일이 노출되면서 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물이 붙는 광고라면 일단 내용물 자체에 우리 보안규정에 의해서 그 피해자가 노출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제한규정들이 있거든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그거를 판매·제공을 통해서 그 피해자가 제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한규정이 대통령령에 들어갈 겁니다. 이건 청소년성보호법에도 똑같이 그렇게 주의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노출 안 되도록 하는 보안규정이 있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광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저희 사례 중에 대표적인 광고 사례는 뭐냐면 우리가 쭉 처벌을……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넣어도 괜찮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저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광고를 보고 온 자에 대해서 부득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구매하게 됐어?’, ‘이런 이런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가 경찰이 한 광고에 의해서 구매한 경우는 당연히 아까 주의사항 규정이라든가 일반적인 판례 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지금 22조의6에 의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자료 사용 제한, 증거 사용 제한 규정에서도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래서 처벌 안 받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무를 운영하다 보면 그 광고에 유통물이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가 있을지 그 범위가 명확지도 않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최종 소비자 또 청소년 소비자일지 아니면 범의를 유발한 경우인지, 원래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다렸던 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에 있어서의 부작용도 줄이고 국가 수사기관의 도덕성 문제도 좀 피하는 차원에서 그냥 ‘유통사범 적발 목적의 광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한정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 광고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하도록, 그건 어떨까

요? ‘유통사범 적발 목적의 광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사실은 위장수사의 목적 자체가 그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균택 위원 그런데 내포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그 배경을 이해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운영자들이 나중에 법 집행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이미 기이 그 내용으로 위장수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규정에 의해서 수사관들이 실제 주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매의 한계점 그다음에 실제 구매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구매를 허용하는 행위로 넣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제한규정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구매를 제한한다면 실제 구매행위를 하는 게 어떤 경우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대표적인 구매 사례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실제 일선에다 확인했더니 구매했던 대표적인 내용이 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매 광고와 관계없이 이미 어떤 불법촬영물을 구매해 간 자의 혼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가져간 이메일 등이 있어서 거기에는 대고 광고물을 하나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사이트에 이런 물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광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광고를 하고 와’ 그러면 저희도 여러 가지 제한규정 때문에 함부로 그 광고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광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와서 널리 보게 하는 광고도 광고지만 특정인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런 사이트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보내는 것도 광고거든요. 그런 좁은 의미의 광고를 주로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의 광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범죄자로 만들어지는 행위는 저희가 안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그런 걸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처음에는 판매 광고가 위낙 범의 유발 위험성이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계속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지, 판매, 광고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제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할 테니까요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께 와서 조금 보충설명해 주시고, 1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좀 정리를 할까요, 저희가? 저희 입장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소지, 판매 그리고 아청법과 마찬가지로 광고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의견은 결국은 위장수사를 한다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태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공행위를 인정해야만 그 효용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또는 성년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범의 유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령에 이 주의의무규정을 집어넣고 제공을 포함시키면 결국은 전체 음란물이나 딥페이크물과 같은 것의 기본법으로서 충실히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청법의 경우에도 나중에 제공행위를 별도로 행위태양에 추가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의의 피해자의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나중에 수사 결과 이후에 범의 유발이 됐더라도 수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공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단은 소지, 판매, 광고 이걸로 정리하는 것도 저희들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흥석기 심의관님인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저희 방으로 와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어디서 붙잡히셨는가……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죄송합니다.

○**유상범 위원** 가다가 저한테 붙잡혔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아까 저희 쉴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저희 방으로 민주당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죄송합니다.

○**서영교 위원** 저한테도 붙잡혀 있었어요. 설명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제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공을 꺼내게 된 이유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가 소지 그다음에 광고, 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라는 것은 결국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주고 파는 경우도 들어간다면 돈을 주지 않고 주는 경우도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개념에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소위원장 김승원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요구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불법행위를 허용을 요청하는 이유가 위장수사의 실질적인 것은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불법행위 요구를 하는데 불법행위 요구하는 여러 행위 중에 ‘너 이것 누구에게 주고 와’라고 할 때 ‘돈 주고 팔고 와’가 있고 ‘누군가에게 주고 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고 와’가 돈을 주지 않고 주는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관님, 예컨대 수사하는 목적은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합성물을 만드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잡으려고 수사를 하는 걸 테고.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그 자를 잡았으면 나머지는 빠져 나가지 않게 삭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그런 합성물을 갖고 예컨대 폭리를, 영리를 취한 놈들이 있다면 그놈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합성물을 보려고 새로 구매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건 이미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사는 아니면 제공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제공이 어느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이 필요한 건지를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텔레그램 수사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텔레그램의 어떤 특정 방에, 공개된 방도 있지만 제한된 방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제한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들이 신분 확인을 합니다. ‘야, 너 일반인이야?’라고 할 때……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신분 위장하시고 들어가서……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럴 때 제한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그 친구의 소위, 텔레그램에서 쓰는 아이디라는 건 TI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대화를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가 TID라는 그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그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제시했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아, 이놈이 누구구나’라는 구체적인 오프라인상의 누구라는 것을 특정해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 가기 위해서는 개한테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개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얘가 그 방에 들여보내질 않고, 그러면 TID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텔레그램에서 행위하는 자가 오프라인상의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어. 이걸 갖다가 너한테 팔 수도 있어’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꼭 제공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너 이것 누구에게 주고 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고 와야 비로소 ‘알았어. 그러면 너 믿을 수 있겠네’ 하고 그 제한된 방에 들어오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실제 경찰관인지를 모르니까요. 나도 마치 살 사람처럼 막…… 결국은 불법행위 하려고 온 자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개들하고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TID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개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어제 서초에 어디 갔더니 누가 많이 있더라’든가 이런 얘기를, 단서들을 거기서 다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의 활동 본거지가 주로 어디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수사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N번방같이 정말 아주 비밀적이고 점조직 같은 그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일반, 예컨대 청소년이라든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 이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광고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렇게 확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5조의6에서 지금 준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의 사용능력 제한 규정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말하는 함정수사 유발 금지 규정 그다음에 법률에 위임해서 대통령령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 규정이라든가 이번에 준수사항으로 올린 범죄 유발 금지 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한을 받고요.

또 실제 위장수사는 비공개수사와 달리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영장 발부받듯이 검사에게 청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크들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위장수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겠다는 것은 가결, 통과시켜 줍니다. 다만 그 것과 부합해서 어떠어떤 방법으로 판매하겠다, 광고하겠다 이런 내용도 거기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일단 한번 통제를 하고 법원에서 허가할 때 또 최종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 위법행위 정도는 인정해야 되겠구나 아니겠구나를 사법적 판단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걱정, 우려되는 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런 경우에 검사에게 ‘제가 이러이런 경우로 지금 갑니다’라고 알려주고 허가를 받아야 그게 가능한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지요. 지금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갔다 오면 좋긴 한데, 갔다 오는 동안 여기는 어떤 변화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갔다 온다가 아니고요 허가서를 미리 받아야, 그 허가서가 나와야 비로소 그 행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장수사가 필요하고 위장수사를 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신분증 위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 그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법으로는 어떻든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검찰과 검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은?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시행령에 구체적인 주의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주의사항에 따라서 양식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신청할 때 신청허가서가 있고 거기 각 양식들에 이런 내용, 구체적 범죄사실,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장수사할 방법들에 대해서 기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장청구 신청하듯이 똑같이 올리면 검찰에서 한 번 통제하고……

○서영교 위원 그런 건 참 좋은 장치인데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범죄를 찾아내고 검거한 게 얼마나 되나요, 위장수사를 통해서?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제가 통계를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1년간 할 때……

○서영교 위원 지금 걱정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특진 걸어 놨지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1차 중간평가를 해서 유공자들 특진 한 번 시켰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또 추가 필요하면 특진시킬……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의 걱정은 열심히 애쓰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특진도 걸고 이마다 보면 진짜 잡을 놈 안 잡고 불특정,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든 한 번 잘못한 것은 계도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진짜 범죄자들은 꽁꽁 숨고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평가는 어떠세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영교 위원 지금 서울대 N번방 사건도 경찰이 잡은 게 아니라 서울대 피해자 여대생들이 잡은 거지, 지금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지난번에 N번방도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위장되어 계속 있었던 것에 의미를 뒀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잡고 서울대 N번방도 피해자들이 잡았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여가위에서 할 때도, 딥페이크 얘기가 있을 때 처음에는 6건 있었어요, 6건. 그런데 상황이 진행되고 한 달 만에, 한 달 안 됐나 갔더니 이백오십몇 건인가 검거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 대다수가 다 10대. 그러면 10대 중에 제작자가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방을 구성해서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있나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통계는 저희가 나중에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최초에 말씀하셨듯이 추적단 불꽃은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경찰은 뭐 했느냐라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까 위장수사의

필요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제한된 방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상의 개가 누구인지 알아야 검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적 단 불꽃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것을 경찰에게 통보해 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거 활동을 했던 건데 경찰관은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찰관도 그 일반……

○**서영교 위원** 아니, 아청법은 별씨 통과돼서 경찰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맞습니다. 그것은 텔레그램 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미 그렇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주긴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저희도 교육을 시킬 건데요—여러 가지 통제장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가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제한장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제한장치 중에는, ‘너희들이 불법행위 해도 좋은데 그 불법행위를 통해서 불법영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제2차 피해가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라’ 그 다음에 ‘범의 유발하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제한규정들은 사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까딱하다가 내가 이것 아무리 공적이 좋지만 위장수사 잘못 들어갔다가 위법행위로 처벌받겠네’ 이렇게 부담을 갖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그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여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1차 감독을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한 번 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불법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착되어 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수사하는데 경찰이 함정수사를 통해 못 하는 부분도 많이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이것……

○**소위원장 김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공을 넣느냐 안 넣느냐? 제공을 넣게 되면 단서조항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령에 수사방법 등의 주의의무로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서영교 위원** 저는 제공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청법 수준으로 하고 이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해 보지만 너무 한계가 있다라고 할 때 제공을 넣는 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17쪽 3호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광고’라고 규정을 해야 아청법상 수사방법인가요, 그것이랑 아까 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정합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

○**유상범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7 그것 넣는 것은, 이것도……

○**전문위원 박동찬** 결정해 주시면……

○**유상범 위원** 이건 다 포함되는 게 맞아요?

○**전문위원 박동찬**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단속의 실효성이나 이런 때에는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 조항을 보시면 음란한 부호나 영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범위가 너무 과대하지 않나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저희는 배제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시고 수사의 실효성이나 위장수사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시려면 그걸 넣는 것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범 위원** 글쎄, 이건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맞는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음란한 부호나 영상이라는 건 사실은 딥페이크물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전문위원 박동찬** 예, 포함됩니다.

○**서영교 위원** 딥페이크를 넘어서 음란한 그 부분을, 오히려 저런 형태를 가서 잡는다면 훨씬 더 성과가 크고 진짜 제작하고 만든 편집자들을 잡을 수 있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저도 제공이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오히려 아청법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고 또 딥페이크는 훨씬 더 범죄 하기가 쉽거든요, 아청법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시행해 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제공은 빼고 시행하는 것도 방법인데 설명 들어 보니까 제공을 넣어도 특별히, 은밀하게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서 ‘너 한번 범죄 해 봐’라고 해서 그걸 해야지 거기 끼워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는, 제공을 안 해서 거기 못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를 못 해 본 거지요.

○**유상범 위원** 그런 부분이 가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넣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주진우 위원** 전문적인 딥페이크 범죄조직이라면……

○**이성윤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영교 위원** 거기 실질적인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 뒤에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니요, 여기도 다 보고받는 건데요. 저희가 그 사례 수집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이런 행위를 통해서 수사한 사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기타 애로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실제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불법행위 요구하는 것 중에, ‘팔고 와 봐’ 아니면 ‘주고 와 봐’ 이러는데 ‘주고 와 봐’의 관련은 제공입니다. 그런데 ‘제공이 지금 형식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무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법무부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제공을 넣어 주게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주고 와 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특정인을 특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막연히 ‘누군가에게 주고 와 봐’라고 했는데 그건 세부적으로 좀……

○**서영교 위원** 우리가 여태껏 얘기했듯이, 막연히 주는 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막연히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진우 위원 특정한 A라는……

○서영교 위원 직접 얘기를 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누구시지요?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과 임윤상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 임윤상 경정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임윤상?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과 임윤상 예, 임윤상 경정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과 임윤상 통상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증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신분증 인증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판매하는 판매 운영자가 ‘자기한테 어떤 성착취물을 한번 보내 봐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찍는 유명한 어떤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뿌려 보고 인증샷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있으면 트렌드가 바뀌면서, 실제로 저희가 시·도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에서 어떤 사건을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인증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로 구슬려서 겨우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속 그런 태도를 고수할 때는 결국 들어가지 못해서 수사에 굉장히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 시·도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영상을 한번 뿌려 볼까지도 논의를 했고 피해자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이나 이쪽의 논의를 할 때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못 하고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법조문이라는 게 공개되고 소위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저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걸고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인증 방식을 저런 식으로 바꿨다면 제공만 빠져 있으면 콕 찍어서 ‘제공해 봐’라고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다른 방법으로 통제를 하더라도 조항에서 유상으로 주는 판매는 들어가는데 무상으로 주는 제공만 빠지게 되면 저는 나중에 문제 소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서영교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찰이 마약을 꼭 판매만 합니까? 관계자들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인증도 꼭 경찰이 안 들어가더라도 관계자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자유롭게 하면서 그것을 같이 보고 검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쓰지 않나요? 꼭 경찰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나요?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과 임윤상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특히 과거 텔레그램같이 보안성을 유지하는 곳이라면 일단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위한 전제 요건에서부터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공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증수단을 위한 위장수사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와 협의하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을 제공하더라도 AI 가상 인물, 즉 피해자가 없는 영상을 제작해서 뿌리는 제공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러한 대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청법과 비슷하게 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제공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 우리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데……

○주진우 위원 통과가 중요하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제공까지.

전 위원님도……

○전현희 위원 다수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판단이 좀 어려운 게 구체적인 현장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이러면 좋겠는데 또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대안으로 나온 거는 그냥 살릴까요?

○서영교 위원 아까 시행령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유상범 위원 이 ‘다만’부터 단서조항 있잖아요. 이 단서조항은 대통령 시행령에 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한다고 단서조항을 시행령에 추가를 해서 수사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요.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수 위원님 의견에 따라 제공을 넣되 제공과 관련된 안전 장치랄까요? 적법을 담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조항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방에 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나중에 설명할 자리가 있으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착취물 플러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1호에 의한 정보를 추가하고 소지, 판매, 광고, 제공까지 넣되 제공에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제공이나 판매는 이렇게……

○소위원장 김승원 제공이나 판매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법무부안으로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박동찬 예, 그게 법무부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22조의39(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이거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이하부터는 법무부 측에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위원님들께.

수정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긴급 수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조의5(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이 부분도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30쪽 보시면, 22조의6(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인데 이건 제가 봐도 통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채택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려는데 위원님들 의견 마찬가지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 없으시고요.

22조의9(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22조의10(면책) 규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 없으시고요.

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별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벌칙 규정도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상물 삭제·차단 등을 위한 응급조치 의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은 없으시고……

말씀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47페이지, 영상물 삭제 등 응급조치 의무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50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의2, 이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을 많이 반영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규정을 논의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의 지금 사법경찰관 쪽에다가 직접 응급조치를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거는 방통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이 부분에 대한 차단·삭제의 기능은 방통위에서 다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통위 통보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체계에 통일성을 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청법에서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아청법은 방통위에서 하고 딥페이크물은 경찰에서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법체계의 정합성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사법경찰관리 쪽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청법도 성폭법처럼 응급조치지요? 그 조항을 경찰에서 하는 걸로 끌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기관 의견을 보니까 경찰청 의견이 신중 검토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

○이성윤 위원 신중 검토로 돼 있다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경찰청만 신중 검토고요, 법무부는 이견 없음이라고 돼 있고.

○ **유상범 위원** 사실상 방통위도 반대하고.

○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좀 내 볼까요?

○ **소위원장 김승원** 예.

○ **서영교 위원** 우선 경찰청이 신중 검토하는 이유는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삭제돼 버리면 범인을 못 찾기 때문입니까?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 **서영교 위원** 계정이 삭제되거나 그러면 못 찾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찰이 신중 검토하는 이유는?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일단은 현행 하고 있는 내용하고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이 업자에게 빨리 삭제하도록 통보해서 빨리 삭제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방침위를 통해 보내는 거나 업자에게 통보하는 거나 사실은 시간차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방침위에 보내는 거나 업자에게 전달하는 거나, 방침위에 보내서 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큼 걸리나요?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길어도 24시간…… 죄송한데 제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저희 의견을 문서로 만들었는데 혹시 배포해도 되겠는지요? 그러면 그 문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묻잖아요. 범죄물을 확인했어요. 이를 피해자는 빨리 삭제해 주기를 요구해요. 그러면 삭제해 주려고 하는데 우선 방침위에 보내서…… 그 어디다가?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내……

○ **서영교 위원** 사업자가 삭제하게 하잖아요?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최소 24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늦어도 24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교 위원** 늦어도 24시간, 빠르면?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실시간입니다. 거의 실시간……

○ **서영교 위원** 실시간?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실시간인데 그러면 여성단체나 아니면 그 많은 TF들이 왜 빠르게 사법관리가 삭제해 주길 바라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1차적으로 저희도 그러니까 현재 사업자를 관리하는 방송통신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바로 업자에게 얘기해서 삭제하는 게 돌아가서 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거를 해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명은 현재 이 업자를 관리하는 구조 체계가 저희가 업자에게 통보를 하더라도 또는 방침위에 통보하더라도 업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업자에게 도달했는데 업자는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경찰에서 왔든 방침

위에서 왔든 삭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현재 제도권 안에 잘 순응하는 네이버라든가 이런 큰 업체들, 국내에 두고 있는 순응하는 업자들은 직접 보내든 방심위를 통하여든 거의 실시간으로 삭제를 합니다.

문제는 따르지 않는 불법 사이트 업체 또는 외국에 두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이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경찰로부터 받은 경우에 현행 전기통신망법에 의하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하면, 그 업자가 얼마만큼 빨리 삭제하라는 얘기도 없이 ‘나는 이거 삭제하는 거 이상하네, 내가 확실히 판단이 안 돼’ 이러면 누군가에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그때 비로소 방심위에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심위에 ‘경찰에서 이런 요구가 왔는데 이걸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심의 요청을 하고 그때 방심위가 비로소 그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그거 삭제해야 돼라고 회신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처음 지금 현행 하듯이 경찰이 방심위에 먼저 보냈다면 방심위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실시간으로 삭제하라고 해 놓고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먼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얘가 삭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심의제도를 뒤에서 얘들이 혹시 삭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삭제하는 게 맞겠지 하고 심의를 해 뒀다가 얘들이, 아까 24시간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심의를 해 두는데 20시간 경과 시까지 삭제를 안 하면 심의에 따른 공식적인 삭제 요청을 하고 방통위에다 얘기를 해서 차단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방통위는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차단이 되는 겁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경찰은 요청해도 말 안 들을 수 있고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다시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고. 그게 처음부터 저희가 방심위로 던져 놓으면 미리 해 두는데 업자에게 던져 놓으면 업자가 나중에 한 일주일, 한 달 뒤에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길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저 말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찬**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경찰 업무는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설명에 따르면 저렇게 방통위랑 경찰이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 물어보면 되지요. 우리 법무부나 행정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리 감독권이 있는 방통위나 방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 입장은 동일합니다.

○**유상범 위원** 대부분의 지금 딥페이크물 이런 것이 유통되는 게 국내 네이버를 통해서 유통되고 그러지 않지요, 카카오나?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유상범 위원** 사실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게 있던데, 외국에 서버를 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미국에 일부 보안이 강화된, 거기로 풍선효과에 의해서 옮겨 가고는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통신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방통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방심위. 정확히 말하면 방심위.

○**유상범 위원** 경찰에 통보를 해도 그쪽에서 수긍할 의무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텔레그램 반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에 방심위에서 삭제 요청을 던지고 경찰에서도 수사 요청을 던졌는데 일단 방심위에게 먼저 회신이 왔습니다, 삭제하겠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분위기에 따라서 경찰 수사도 협조하겠다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불법업자들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건 아니지요. 텔레그램에다가 경찰이 계속 요청은 했는데 텔레그램이 반응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방심위가 텔레그램을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 사이트고. 그렇지 않고 방심위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게 해 왔던 거고 그랬던 거지 방심위가 차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방심위의 얘기를 듣고 경찰의 얘기를 듣지 않은 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들 입장에서……

○**서영교 위원** 경찰은 여태껏 한 번도,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한 번도 텔레그램이 우리에게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범죄물을 삭제를 요청하고 텔레그램에 이야기했으나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심위가 이번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텔레그램도 삭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심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찰이 어떻게 접근했느냐 아니면 이제 텔레그램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노력하고, 이런 범죄가 거기서 만연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반응 안 하는 것도 이상했던 거고 그것을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태껏 얘기 들으면 뭐냐면 여성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요. 그런데 신고가 되고 ‘네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내가 수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경찰의 접근이 그립단 말이에요, 나는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서울대 N번방 여대생들이 갔을 때 안 해 주니까 여대생들이 직접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유상범 위원** 기존 제도가 정보통신망법이나 아첨법 다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따로 떼 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일단 보류를 하고 위장수사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 하나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하면 의견이 모아지거나 아니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다음에 보이스피싱 계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정이 다음에 있어서 얘가 계속 스미싱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경찰에서 다음에다가 삭제해 달라고 얘기해도 다음이 삭제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행안 위원장으로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다음을 불러서 ‘왜 삭제를 안 하느냐, 이게 범죄 계정인데’라고 했더니 자기네 약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관 때문에 경찰이 하는 연락도 안 들는 거예요, 범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불러서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바로 삭제하겠다고 약관을 고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경찰이 그것을 삭제할 힘을 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준다면 경찰의 연락으로도 삭제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지금 말 들으면, 잘 몰라서 경찰에 빨리 연락하면 삭제가 빠른 줄 아는데 지금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방심위를 통해 가지고 와야 이게 훨씬 빠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어떤 제기를 했던 전문가들이 진짜 방심위가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요청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께 저 말이 맞느냐라고 물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심의관님……

○유상범 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에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아청법도 동일한 형태로 결국 방통위를 통해서 삭제·차단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행위만 따로 그것은 경찰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4조의4가 신설되는 조항인 것 같아요. 맞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3호부터 볼까요?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이건 피해자한테 안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는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소위원장 김승원 피해자가 방통위에 신고하지는 못합니까, 자기 영상물 삭제해 달라고? 민원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지금 제가 3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요.

○소위원장 김승원 3호는 그렇고요. 4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지금 47페이지 추미애 의원님 안을 보시면 됩니다. 3호·4호는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경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이것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 보이는,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의 할 일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 정보통신제공업자한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아니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정보통신망법 몇 조에 보면……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영상물을 올린 자, 전파하는 자, 전파하려고 하는 자, 그자에 대한 제지 및 처벌 경고라고 저희는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한테도 당신들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때는 그자가 올린 게 아니고 올린 자는 따로 있고요. 그 올려져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그것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것을 방조법으로 의율하려면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일단은 정통망법에 의한 행정벌 위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아까 망법 몇 조에 보면 정보통신망이 음란물 그런 착취물을 게시하고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예외……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도 저는 읽혀지고 그것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건 1호인데 삭제·차단 요청을 사법경찰관리가 정보통신망업자한테 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방심위에다가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원래 방심위가 했던 그 행위를 못 합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아까 실효성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빨리 내려 달라라고 하고 동시에 방심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피해자는 정말 죽을만큼 괴로울 텐데 국가기관이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에다가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똑같은 공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보내고 방심위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메일로 접수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현장수사 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수사 경찰관이 통보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가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삭제 요청을 빨리해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막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방침위를 통해 하든 업자에게 직접 통보를 하든 말 잘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차가 없고 말 듣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협행법처럼 하게 해 주시면 제2차 피해 방지에 대해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수사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제 요지는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도 직접 하고 방침위한테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금지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규정만 이것 하나 하면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메일로 접수시키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무를 양쪽 기관에다가 대상자만 달리해서 보내는 건데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이성윤 위원 저도 이 조항이 나오게 된 배경을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경찰이 과거 수사권 조정 시절에는 이것을 경찰이 직접 하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난 후에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업무에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피해자들이 걱정되고 그러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1초, 1초가 마음이 타들어 가는데 경찰이 방통위에 던져 놓고 언제 되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이게 책임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책임지고 방통위는 직접 하든 해 가지고 유통을 못하도록 허락을 받으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한 번 올라가면 하루 지나면 말이지요 전 세계에 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하루가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그렇게 자기들 이제 와서는 못 하겠다, 신중 검토의견을 읽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나는 경찰은 ‘우리가 확실하게 피해자들은 막아 주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말로는 국민들 위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서 권한을 막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부담이 되니까 ‘우리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통위에 통보했거나 통보했는데 실시간으로 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하루, 이를 걸리는 것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반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중적이십니까. 경찰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무려 세 분이나 냈잖아요. 그 이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안 되고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물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버려요. 하루 지난 뒤에 삭제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을 위하고 피해자를 위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행동은 반대로 해요. 귀찮은 것은 하기 싫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조치다 해서 차단하고 안내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이 법안을 세 분이나, 세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중 검토라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이 취지는, 성착취물라든가 딥페이크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버리고 그 후에 경찰청에서 방통위랑 해 가지고 삭제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찰이 발견하는 즉시 ‘삭제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잘될 때만 자꾸 얘기하고 안 될 때는 경찰이 책임 안 지고 방통위에 책임 씌우라는 것 아니에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국민들 위해서 정말 이런 성착취물·딥페이크물 확실하게 없애 주고 그리고 유통도 안 되게 막겠습니다…… 이 취지가 실시간으로 막으라는 취지예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죄송하지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찰에 주고 싶은 것이 삭제권을 주는 게 아니고 삭제 요청을 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성윤 위원 아니, 책임지고 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아니, 그러니까 책임은 저희가……

○이성윤 위원 수사권도 직접 다 합니까? 법원에 가서 유죄 나와야 수사권이지.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삭제권이 아니고 삭제 요청을 누구에게 하라는 의무 규정을 두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삭제 요청을 저희가 직접 업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방심위 통해서 하는, 두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법에는 없지만 MOU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체제가 방심위를 통해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새로 나온 업자에게 직접 던지라고 하는 것과 시간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을 잘 듣는 업자를 생각……

○서영교 위원 그러면 말 잘 듣는 업자에게 하시면 되겠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렇지요. 그런데……

○이성윤 위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말 잘 들어 가지고 바로바로 삭제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의원들 세 분한테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를 전제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때……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경찰한테 책임지고 수사도 하고 책임지고 막아라 이런 것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삭제 요청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고요 방심위를 통해서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때 얘기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이 요청했을 때는 지금 현재 방통위법이나 이런 것에서 방심위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심위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해 주세요라는 변칙을 통해서……

○서영교 위원 아니, 이의 제기하는 건 방심위가 하고……

○이성윤 위원 그 이의 제기는 예외적인 사유잖아요. 직접 빨리빨리 더 이상 유통, 퍼지기 전에 하라는 취지인데 자꾸 이의 제기 말씀하시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서영교 위원 정리하셨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말씀……

○유상범 위원 이것 관련 규정이 보면 지난 9월 30일 과방위에서, 14조의2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방통위에 통보가 오면 정보 처리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 안이나 다른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차단 요청을 한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배제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결국 경찰이 일이 하나 더 느는 거지요. 그렇지요? 결국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이 하나 느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지금 방통위가 다 하는데 이 범죄만 특별하게 경찰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이 중복적 업무 처리를 하게 되고 최종적인 삭제 요청 권한은 사실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통지하는 정도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업무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절충안, 모든 권한과 책임을 경찰에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빨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거기서 말 안 듣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지요. 방심위로 올리고, 수사하다가 이게 바로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경찰이 삭제하게 경찰에게 권한을 주고. 그래서 경찰에서 삭제된 건 방심위가 더 할 필요 없고, 같이 던져서 경찰 말을 안 듣고 불법적인 애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방심위를 통해서 가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정보통신업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계속 지휘·감독을 하는 방심위의 요청을 따르게 돼 있지요. 경찰이 요청하는 것은 따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이게 범죄물인데요. 그 범죄물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삭제 요청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방심위라는 거예요. 권한을 가

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 요청 권한을 주는 거지요, 그 권한과 더불어서 책임도 같이 주는 거고.

○유상범 위원 경찰에게 그런 권한까지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보통신을 관리하는 방통위가 다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서영교 위원 아니, 금방 우리 의견을 모으자면서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냅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그걸 여기서 규정을 하더라도 경찰에게는 요청 권한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결과 이행에 대한 것은 방심위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요청 권한이 경찰한테 주어지긴 하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방심위에 통보 그다음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통보, 두 가지 이중업무가 생긴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서영교 위원 동시에 나가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냥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벌칙) 조항 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같은 걸로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경찰의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만약에 태만히 삭제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사실은 95조의2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경찰의 그런 조치가 굉장히 큰……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뭐랄까요, 강제력? 실제적인 강제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실상의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0조의5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의견이 나왔듯이 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통신, 저희도 그 취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면제규정도 있고 시행령에 넘어가면 그것 관련해서 거기에 비로소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이 그 관련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방심위에다가 다시 심의 요청을 한다는 게 그것 관련 시행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법률에 의해서는 경찰이 요청했을 때 안 들으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벌칙규정의 면책규정이 단서의 앞에 붙어 있고 또 얘들이 면책규정과 별개로 방통법 기본규정에 따라서 방심위에다가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업자에게 요청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이 방심위를 통해 던지는 것과 시간차가 없으니 저희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방심위에게 던지는 걸로 최종 확정됐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걸 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주진우 위원님 혹시……

○주진우 위원 방심위를 거쳐서 하면 시간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저희가 방심위에 그때 문의했을 때는 거의 실시간으로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위원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위원장님 의견 말씀하셨듯이 양쪽에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무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이 먼저 통보하면 통보받는 입장 쪽에서는 바로 삭제 조치를 들어갈 건데 또 방통위에 온 게 이중으로 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게 2개 오면 이게 혼선인가 뭔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주체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애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좀 너무 예외적인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몰이라고 경찰에서 이것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통위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경찰로부터 통보받으면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돼서 시간적 간극이 없다라고 하면 방통위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적 간극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하고 통지가 안 되거나 좀 예외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방통위에 협조를 구해서 또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대규모 유통이 되는 곳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경찰에서 딥페이크몰이니까 빨리 삭제하시오라고 하고, 처벌규정도 있는데 그걸 받은 쪽에서 그냥 무시한다? 이것도 있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 정도 무시할 정도의 거의 범죄자 조직 비슷한 IT 업체라면 방통위도 방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위가 통보해도 그건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애로사항은 잘 알겠지만 인력진단을 따로 하는 한은 있더라도 이건 어느 한 군데로 일원화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러지 말고 한번, 이게 사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갑자기 통보를 받았는데 삭제를 안 하면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경찰에서 하고 방통위에서 하고, 과거에는 한 기관에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응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경찰까지 나와 가지고…… 실체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고발이 되면 경찰 것 때문에 처벌 받고 그러니까 이중…… 처벌의 가능성성이 훨씬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방통위랑 경찰 불러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맞지 지금 다른 법률에서는 다 방통위로 통일을 시켰는데 여기서만 이 범죄 하나 가지고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니까 여기는 경찰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 통해서 방통위에서 그러면 경찰에서 받은 것을 어

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주진우 위원** 그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건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니까 더 논의해 본다는 주장 자체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경찰한테 묻고 싶은 게, 방심위는 24시간 근무 체제가 안 돼 있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방심위는 이런 것 때문에 긴급심의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면서 긴급심의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들이 모여서 이걸 의사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긴급심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오프라인에 모여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오는 것과 관련해서 긴급심의 제도를, 지금 법률에도 긴급심의 제도를 두도록 근거규정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세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24시간 근무하면서 경찰로부터 통보가 오는 순간에 방심위 직원들은 바로 해당 업자에게 삭제하도록 통보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지금 이런 건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의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위원들이 모바일로 투표를 바로 한답니다. 그러면 바로 그 결과가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얘들이 나중에 반항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심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그러면 텔레에는 경찰이 왜 연락을 했어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텔레요?

○**서영교 위원** 예.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텔레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삭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경찰은 수사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심위는 방심위의 원래 의무대로 삭제 요청을 했던 거고요. 경찰은……

○**서영교 위원** 그러면 텔레에 가야 될 내용을 방심위로 보낸 겁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텔레에다가 보냈느냐라고 했더니 텔레에서 반응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것은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위해서, 텔레 안에서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났는데 그 가진 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상의 누군지 개들을 찾기 위해서는, 텔레에 가입할 때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개들이 활동한 방에, 어떤 방 개설자의 TID가 뭔지를 알면 TID를 통해서 발급받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그 전화번호를 우리에게 회신하라……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것은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던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압수수색……

○서영교 위원 그래서 방심위는 어떻든 삭제 요청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해 가지고 방심위는 그게 왔고. 그러면 그다음에 텔레랑 연결이 돼서 개네들 전화번호랑 이런 걸 받게 된 건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는 계속 삭제하라는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삭제하겠다는 회신 이런 걸 받은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수사, 조사를 해야 되니까 관련된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없다 그러면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해야 주겠다 이런 식의 밀당을 계속 주고받는 행위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유의미하게, 지금 수사 중이라 저희가 뭐라고 딱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서영교 위원 그러면 수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고 삭제라든지 이런 것은 방심위를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늦지 않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텔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번호나 이런 걸 요청하는 거지 삭제 요청 이런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영교 위원 그런 자료를 달라면서 이것은 삭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겠네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해 못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거고요. 삭제와 관련해서는 방심위로 던져서, 그러니까 방심위가 직접 인지해서 이미 삭제 요청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새로운 내용도 있을 건데 그것은 저희가 수사를 위한 수사 정보 요청과 별개로 방심위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 삭제를 하도록 통지해 주세요라고 통보하는 행위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여성단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말처럼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외국의 음란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구글을 통해서 방통위가 차단을 요청하는데 방통위가 네이버나 한국 관련한 것들은 웬만한 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는 구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구글이나 이쪽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통위가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로 하나 경찰로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란 말은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말처럼 경찰이 수사를 좀 집중해서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제가 모든 단체의 이야기는 아니고 디지털 관련한 부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방심위를 통해서나 경찰이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한 군데서는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지금 상황으로는 방심위를 통해서 가는 걸로 하고 경찰은 수사를 좀 집중하고 수사해서 삭제가 필요한 건, 피해자가 경찰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싶은데 피해자들은 방심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경찰이 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해 주세요 이러고 오는데 그것을 방심위를 통해서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려 주고 조치한 것을 보고해 주고 이런다면 우선 지

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범죄 통보하고 방통위를 통해서 차단하고 하는 규정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럼 경찰도 같이 통보하게 만들거냐, 아니냐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방통위도 같이 불러서 한번 나중에 추가로 재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오늘 성폭법은 좀 완결을 짓고 싶은데 그러면 재논의를 다음 달에 더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은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앞에 정리된 부분은……

○**소위원장 김승원** 통과시키고 또 논의를 하자고요?

○**유상범 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주진우 위원** 아니면 기존 규정 체제랑 맞춰서 방심위로 한다고 하면……

○**유상범 위원** 이 규정을 자꾸 위원장께서 넣으려고 하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여가위에서 9월 26일에 통과된 건데 저희는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여가위 통과가 아니라……

○**소위원장 김승원** 9월 26일 날 통과된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9월 30일 과방위에서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처리를 지시할 수 있도록, 14조랑 14조의2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방통위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을 해 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충돌이 돼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동일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저번에 개정할 때 동일 내용의 응급조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 드렸던 자료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여가위 통과할 때 그런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예결소위가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 중 다섯 분이 또 밤새도록 예결소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6시 안에 끝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합의된 부분만 통과를 시키고……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간첩법이랑 출입국관리법 그것, 출입국관리법은 이견이 없으니까 그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간첩법을 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간첩법은 상정이 돼 가지고 별씨 두 번 계속 논의가 안 되고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야가 빨리하자는 건데.

○**소위원장 김승원** 10분 안에 그게 될까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필요할 때는 시간을 좀 더 두는 거지 지금 한 7시까지 하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검토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필요하면 다음 법안1소위를 조금 더 일찍 잡아서 이 법안 추가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심의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법안1소위를 또 할 거니까요.

○**유상범 위원** 다음 주에 법안1소위를 언제 또 해?

○**소위원장 김승원** 또 할 겁니다. 이번 달에 법안1소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의관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야 되나? 한번 잠깐, 법무부차관님도 한번……

저희가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를 시키고 시행일을 갖다가 정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필요할지 실무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일부 주의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 지금 대통령령에 규정할 사안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위원장 김승원** 6개월?

○**유상범 위원** 아니요, 주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안 넣고 그냥 이 본문에 남겨 두기로 했어요.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이 규정을 지금 본문에 그냥 남겨 두기로 했거든.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다만 앞에서 광고 관련돼서 많은 부작용 우려도 제기를 하셔서 저희 현재 계획은 시행령상에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광고가 어떤 영상을 첨부한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 그러면 ‘다만’은 삭제하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다 넘기면 되겠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법률안에 두는 것이 원래 저희 안이기도 한데 대통령령에 둬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법률에 특정하기가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고는 이미 아청법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안전장치가 시행령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시행령을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아청법, 그러니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안전장치를 뒀듯이 이쪽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동일한 대통령령을 규정을 해서 똑같이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그게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서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6개월 아니면……

○**법무부차관 김석우** 한 6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6개월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면 6개월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관련 법안 중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12항 및 3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8항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포함시키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 35, 36항……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에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1번에 넣어 줘요, 계속 이런 식의 순서를 하지 말고.

○**소위원장 김승원** 앞부분에 넣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1번에 넣어 줘야지. 원래 계속된 것은 1번에 넣고 뒤에 들어온 것을 뒤에 넣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순서를 정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앞부분에 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유상범 위원** 아니, 출입국관리법 이것은 해 줘야지. 그것은 하기로 했잖아, 이의 제기 없이.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해 줘야지요, 지금 낸 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떡해.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아까는 또 크게 쟁점이……

○**유상범 위원** 쟁점이 없어서 빨리하자고 한 거고. 지금 출입국관리법은 쟁점이 없잖아. 그리고 정부에서도 발의한 법안이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도대체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부터 얘기한 거예요. 오전 중에 한 얘기가 다툼이 없는 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툼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일방 통과시킬 법은 통과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해서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사전에 논의된 부분 그것을 순서대로 하려면 그것이 빨리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 지금 그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안이면 하나는 받아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법사위가 하나하나의 법률안이 국민의 신체라든가 자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게 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유상범 위원** 하나만 제안을 할게요.

위원장님, 출입국관리법……

○**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 제안 받고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두 법안만 간단히 검토하고, 그러면 일단은 이거라도 마무리를 해 줘서 우리 여당에서 낸 법안도 하나는 처리해 주는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빨리 이것은 논의를 하셨어야지.

○**유상범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것……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조항 빨리 뒤로 미루자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계속 이것 개정안을 넣으려고 무리하게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무슨 개정안이에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 조항 임의조치와 관련돼서.

3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17시55분)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35항 및 36항, 2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5항에 대해서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유상범 의원안이구먼.

○**유상범 위원** 정부안이에요, 정부안. 나는 앓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애정이 있는 법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35항 유상범 의원님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심사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쪽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외국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근거 마련은 부처별 정보 표기·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외국인 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와 관련된 통일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8조의3제1항의 수집·보유·관리 행위 근거하고 제공행위의 근거를 구분해서 법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 외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행정기관마다 달리 표기해서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표준화된 외국인 인적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과세, 복지 등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의견이 없고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향후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한 출입국관리 업무가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제안자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문으로 ‘박’을 쓸 때 ‘Park’를 쓰는 것과 ‘Pak’를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는 ‘박’이지만 외국인으로 보면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통일을 시키고 다른 행정부처에도 동일한 정보 제공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출입국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균택 위원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법부에서는 사법부의 업무 체계와 접목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염려되는 바가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 본 다음에요, 가족관계등록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전산과의 충돌 여부를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름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여러 정보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여기 관련된 정보지요.

○**서영교 위원** 박이냐 백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은 박이고 백이고가 아닐 거고.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지요. 외국인도 영문 쓰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에서 통일해서 관리하자는 건데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보다는…… 차라리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출입국관리본부장입니다.

○**유상범 위원**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여기 나와서 간단하게 한 3분 안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기본적으로 성명 외에도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 정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쓰도록 권고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여권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들은 있는데 해당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정보도 없어서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권에는 ‘Park’ 돼 있는데 자기들은 그 여권 정보 외의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Pak’로 쓴다든지 행정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출입국관리가 여권에 기초해서 가장 표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행정기관마다 공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영교 위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성윤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행정기관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어요? 다른 행정기관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서영교 위원 불편한 게 있어요, 이걸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데이비드 김’이라고 여권 정보에 쓰는데 경찰 같은 데에서는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은 그냥 ‘김 데이비드’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서영교 위원 ‘김 데이비드’라고 표현하게 하면 뭐가 안 돼요?

○이성윤 위원 아니, 그래도 여권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경찰도 수사를 할 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경찰이 여권이 있으면 여권으로 하겠지만……

○이성윤 위원 아니, 이게 해 가지고 무슨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무슨 피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혼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 그 말씀입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각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이름을 확인하려고, 이름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간호사들이 막 했는데 그냥 부르는 대로 한다든지, 여권 정보가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그냥 해 갖고 저희들한테 주니까 우리가 동일인 이것을 제대로 구분을 못 해서 행정기관 간에 그런 거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은 적도 많았고. 그것은 수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서로 똑같이 공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대부분은 여권 정보인데 일부가……

○이성윤 위원 이름을 읽는 것을……

○서영교 위원 일이 별로 없으신가 보지요?

○이성윤 위원 아니, 시스템은 이미 갖췄어요.

○주진우 위원 아니, 실질적인 문제점을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뭐인지……

○주진우 위원 아주 크게 어디서,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든지 이런 사례를 한두 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 과장이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출입국관리본부장도 얘기를 못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현행법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 정보가 없으면 경찰에서는 그냥 한글 이름으로 작성할 때 그 기록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있는 영문 성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일인, 그 한 명을 특정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법원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분에 대해서는 한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저희 쪽에서는 통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이성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어디 사는지 이런 것을 쪽 관리를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에 정리를 해 놓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취지가 코로나 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왜 급하게 필요한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수사에 있는 이름과 여권에 있는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수사하다 그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전체 외국인들의 그동안 있는 여권으로 정리해 놓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다 정리해서 모두 다 공유하겠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있나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사하다가 A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저희가 관리하는 A라는 사람하고 동일인인지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 그것은 확인을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정 처리에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서류를 갖고 있고 거기서 이 사람을 잡았는데 동일인인지 요청하면 알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못 알려 주나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아니, 경찰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권 정보하고 실상에서는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 하러 다 조정을 하냐 이거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해 주면 되는 거지.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그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갖췄는데 그걸 뒷받침할 법률 근거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법률 근거도 없이 돈 들여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사람들 정보를 다 정비했나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춘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해서 미리 예산을 받아서 시스템을 갖춘 거고 그거를 뒷받침할 법률을 지금 간단히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외국은 어떻게 해요?

○**서영교 위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법률로 뒷받침해 주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미리 저희가 이만저만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하든지. 그것도 하나도 없이 별써 돈 해서 다 해 가지고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유상범 위원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자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해가 돼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미리라도 좀 얘기를 하든지, 이해도 시키든지, 어느 구조가 돈 다 쓰고 별써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법률 뒷받침해 달라고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법 규정 없이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사례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어쨌든 외국인 정보도 지금 외국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저는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 사례도 지금 서영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어떤 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가, 그때그때 조정하면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 누가 외국인이 자기 개인정보 공유했다고 이의 제기하고 있나요? 소송 중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왜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게 딱 와닿지를 않아서……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건강보험을 예를 듣다고 보면 건강보험에서도 외국인한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하고 달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누수나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자료가 온다면 저희가 이 외국인이 이 사람이 맞다는 것을 회신을 해 주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집 다 하는 것?

○이성윤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면 되지.

○서영교 위원 정보 그렇게 다 모으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유상범 위원 그건 출입국 관리지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성윤 위원 몇 명이에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250만 명……

○이성윤 위원 253만 명? 253만 명을 관리하면서 법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한글 이름으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영주권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합니까?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면?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출국하면 출국하는 것도 법무부의 업무……

○이성윤 위원 그것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법 없어도?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성윤 위원 다른 국가기관에서 확인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 주는 거

잖아요.

○법무부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예.

○주진우 위원 차관님이 정리를 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250만 명 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렇게 달랑 해 달라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되냐고요, 더군다나 이것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구축 사업 완료했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사전에 의원님들 방에 설명을 드렸으면……

○주진우 위원 다음에 논의를 더 하든지……

○유상범 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갑시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다 해 주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일부 체류 자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외국인에게 무슨 건강보험을 해 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저희들이……

○서영교 위원 세금을 낸 사람에게 해 줘야지. 어쨌든 그것도 그런 것 다 보면서,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을 하는 외국인을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보를 그것까지 정보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건 코로나 때 정보, 수사 관련한 정보, 건강보험 관련한 정보, 의료보험 관련한 정보 이런 거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뒤늦은 감이 있어서……

글쎄요, 오늘 이것……

○주진우 위원 이것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안 되시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필요한 법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잠깐만 제가 수정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아니면 장기 체류하거나 그런 거는 기준에 저희 법률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수집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도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관에서도 개별법이라든지 건강보험 차원이라든지 수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출입국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이고 가장 많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행정 목적에 따라서 수행하는, 성명이라든지 이런 불일치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제공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서영교 위원 요청을 하면 제공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저쪽이 요청하면 지금은 못 주나요?

○이성윤 위원 줄 수 있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지금도 그쪽 개별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서영교 위원 어떻든 이해가 조금 필요하니까 와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서영교 위원 마치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고 있더라고.

○서영교 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여기 법에 딱 정보 제공만 있어, 지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36항도 출입국관리법인데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설명을 잘 하려 오세요. 와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차관부터 문제예요. 오시라니까. 와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 한 번 왔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유상범 위원 정부안은 안 봐요, 36항?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오늘 안 된다고……

○유상범 위원 아니, 정부안, 2개 해서 출입국관리법 특별한 것 없으면 보자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는 또 뭐야.

○소위원장 김승원 설명을 듣고 나중에 논의하자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세요. 같이 해서 다 들어 보고……

○유상범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법사위가 열린다니까, 1소위가 열린다니까 그때 좀 미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승원 박군택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전현희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